

**THE GLOBAL
AGRO-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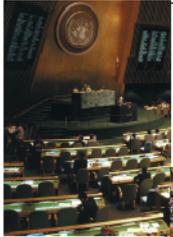
국제농업소식



www.mifaff.go.kr

2008. June

NO.84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026-07

THE GLOBAL
AGRO-INFORMATION

국제농업소식



www.mifaff.go.kr

2008. June

No. 84



농림수산식품부
국 제 농 업 국

Contents

2008.June. No.84
THE GLOBAL AGRO-INFORMATION

주요 통상 쟁점

-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3
- 한국-멕시코 FTA농업협상 추진 동향 9

세계농업 흐름 분석

- 2007 세계식량전망 15
- 곡물가 급등에 따른 각국의 대응 23
- 일본의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발전상황 25
- 뉴질랜드 농업개혁 정책 및 시사점 47
- 2008 미국 농업법 주요내용 61
- 세계농업통계 71

특별기고

- 캐나다 농업의 이해 97

해외 농업현장 방문 후기

-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식량안보 고위급회의를 다녀와서 121

해외농업 · 통상 기사 요약

- Asia's other miracle(Economist紙 2008. 4. 16일자) 13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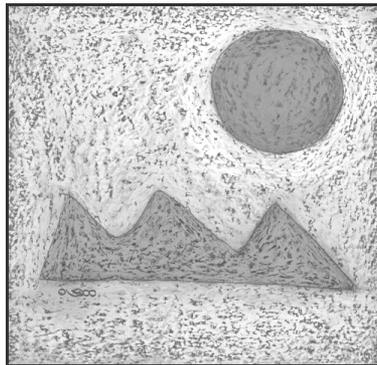
주요 통상 쟁점

1.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다자협상과 사무관 최정미

2. 한·멕시코 FTA농업협상 추진 동향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김신재



사람의 목적은 소득이 아니라 환경과 더불어 성장하고,
또 환경과 결합됨으로써 자기의 의식을 실현하고
또 확대해 가는 데 있다.

- R. 타고르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전망

다자협상과 사무관 최정미

팔코너(Crawford Falconer) DDA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5.19일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2차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이번 2차 수정안은 지난 2.9일 세부원칙 1차 수정안이 제출 이후의 논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이며, 그동안 진행된 민감품목 관련 소비량 계산방법 등 최근 논의를 반영하였다. 민감품목의 개수 및 TRQ(저율관세물량) 증량수준, 특별품목의 개수, 보조금 감축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핵심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2월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추후협상의 쟁점이 될 팔호의 수가 30개로 현저히 줄어 각료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 평가된다.

(주요내용 : 별첨 참고)

민감품목은 선진국 기준으로 전체 세번의 [4-6]%를 지정하여 구간감축률보다 적은 감축률을 적용하되 국내소비량의 3~6%만큼 TRQ를 증량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TRQ 증량 대신 이행기간을 줄이는 등의 우대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간 논의를 반영하여 세번단위 소비량 계산 방식이 품목단위 소비량 계산방식과 함께 첨부되어 있다.

관세 상한은 감축후 100%초과 세 번이 전체4%이상이면 민감품목 전체의 TRQ를 0.5% 증량하도록 하는 1차수정안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개도국은 150% 초과세번이 4% 이상일 때, 0.37% 증량하도록 하는 개도국 우대조항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개도국은 전체 세번의 8%[최대 20%]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중 일부는 감축의무를 면제하고 그 외는 평균 15%를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2차 수정안 배포 후 1주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친 후 5월 26일 주간부터 다양한 형태의 다자협회가 진행되었다. 2차 수정안을 평가하고 미합의쟁점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는 내용이었는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2차 수정안이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의 기초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팔코너 의장은 특별품목, 관세상한, 면화 등 핵심이슈에 관한 절충안 모색을 위해서 10여국 내외의 주요국을 초청하여 소규모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상한 소규모 고위급회의와 특별품목 소규모 고위급회의에 초청되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동 회의에서 의장 또는 주요국이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향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부문간 협의(horizontal process) 및 각료회의가 7월 초중순경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에서 선·개도국간 입장차가 크고 쟁점에 대한 뚜렷한 타협안이 모색되지 않아 협상전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각료회의에서 농업 및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이 타결될 경우 '08년내 DDA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업/NAMA와 규범, 서비스

를 나누어 협의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회원국이 있으며, 미국 대선('08.11월) 등 주요 회원국의 정치일정으로 인하여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참고 1 세부원칙 2차 수정안 주요내용

1. 시장접근

□ 관세감축률

- 최상위구간(4구간)을 제외하고는 기존 범위의 중간수치를 제시
-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으로 기존 수정안과 동일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구간경계	기존	수정안	구간경계	기존	수정안
1구간	0~20%	48~52%	50%	0~30%	32~35%	33.3%
2구간	20~50%	55~60%	57%	30~80%	37~40%	38.0%
3구간	50~75%	62~65%	64%	80~130%	41~43%	42.7%
4구간	75%이상	66~73%	66~73%	130%이상	44~49%	44~49%

- 선진국 최소 평균감축률 [54]%, 개도국 최대 평균감축률 [36]%

□ 민감품목

- 민감품목 개수는 선진국은 전체 세번의 4-6%, 개도국은 전체세번의 5.3-8%
- ※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준시 58-87개, 개도국 기준시 77-116개로 예상
- TRQ 증량수준은 deviation에 따라 소비량의 3~6% 수준으로 기존 수정안과 동일하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TRQ 증량 외 이행기간 조정 등 대안 추가

관세감축이탈수준에 따른 TRQ 증량물량 (소비량대비 %)

조 건		선진국	개도국
Deviation 1/3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2/3수준 적용)		[3] [5]	[2] [3.3]
감축	단,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0%이상일 경우	[2.5] [4.5]	[1.7] [3.0]
조정	단,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30%이상일 경우	[2] [4]	[1.3] [2.7]
Deviation 1/2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1/2수준 적용)		[3.5] [5.5]	[2.3] [3.7]
감축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0%이상일 경우	[3] [5]	[2] [3.3]
조정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30%이상일 경우	[2.5] [4.5]	[1.7] [3.0]
Deviation 2/3 적용시(구간별 감축률의 1/3수준 적용)		[4] [6]	[2.7] [4]
감축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10%이상일 경우	[3.5] [5.5]	[2.3] [3.7]
조정	현행 TRQ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30%이상일 경우	[3] [5]	[2.0] [3.3]

□ 관세상한

- 관세상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감축후 관세가 100%이상인 세 번수가 4%이상인 경우는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만큼 추가 증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개도국 우대 내용을 추가

※ 개도국은 150% 이상 세번수가 5.3%(4%에 1/3추가)인 경우 적용

□ 특별품목

- 특별품목 개수는 8% [최대 20%], SP의 전체 개수가 8%로 제한될 가능성을 암시
- 관세감축은 평균 15%(최소12%, 최대20%) 감축방식을 제시하면서 일부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감축면제가능성을 유지

구분	SP 품목중	대우(감축율)
1	[40][no] %	[0]%
2	나머지	평균 15%, 최소 12%, 최대 20%

□ 열대작물

- 열대작물 리스트 및 관세감축 내용은 그대로 유지
 - 케언즈 그룹이 제안한 리스트(HS 6단위 기준 94개 세번) 및 UR협상에서 사용된 리스트(HS 4단위 기준 95개)를 모두 제시
 - ※ 단, 선진국 및 능력있는 개도국으로 선언하는 국가에 한해서만 적용

□ TRQ 관리방안

- 1차 수정안('08.2)과 비교할 때, 절차적 측면 규정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미소진 쿼터 해결 매커니즘을 일부 개정
 - TRQ 소진율이 3년이상 일정수준이하로 떨어지면 미소진쿼터 해결 매커니즘 발동(선착순배정, 추가의무부과 없는 방식으로 관리방식 변경)
 - 시장상황 등 미소진 사유에 대해 수출국들을 이해시킬 경우, 미소진 매커니즘의 문제가 해결됨을 제시
- 쿼터내 세율을 감축하는 두가지 방법을 병렬적으로 제시
 - (1안) 쿼터 밖 세율의 구간감축율을 적용하되, 민감품목은 적은 감축률 적용
 - (2안) 5%이하로 쿼터내 관세 감축 또는 철폐하되, 개도국은 3년의 추가 이행기간

2. 국내보조

□ 보조금 감축률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유지

국가	OTDS	AMS	De minimis
EU	[75][85]%	70%	[50][60]%
미국·일본	[66][73]%	60%	
그외 선진국	[50][60]%	45%	
개도국	[33.3][40]%	30%	[33.3][40]%

- 다만, OTDS 한도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인 농업총생산액 및 품목별 품목특정 AMS 및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한도를 세부원칙에 첨부하도록 규정
 - ※ 단, 품목특정 AMS 한도 첨부는 선진국에 한함

□ 허용보조

- 허용보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지불과 관련하여 요건을 강화
 - 직불제의 수혜자격을 정하는 기준년도를 고정하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 이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 변경요건으로 예산 유지 및 감축 내용이 다시 포함
 - ※ '07.7월 세부원칙초안에서는 예산유지 요건이 있었으나 '08.2월 수정안에서는 동 요건은 삭제되고 '상당히 긴 기간'의 요건만 규정

한 · 멕시코 FTA농업협상 추진 동향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김신재

북미와 중미의 지리적 관문 역할을 하는 멕시코는 북으로 미국과 3,2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으로는 과테말라, 벨리즈와 이웃하고 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9배이며, 인구는 약 1억 5,000만명으로 수도인 멕시코시티에만 약 2,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주요 자원으로는 석유, 천연가스, 은, 철광석 및 커피 등이 있다. 종족은 메스티조(혼혈)가 60%, 인디오(원주민)가 30%, 백인이 9%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이 8천392억 달러로 14위이며, 이는 8천880억 달러로, 13위인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멕시코는 많은 나라와 FTA를 매우 적극적으로 맺은 나라로서 일본과 미국을 포함하여 43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양국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2006년도에는 TV와 평판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모두 62억8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수입은 구리제품과 통신기기 등 8억 달러 수준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2006년도 말 기준으로 모두 4억5천만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멕시코에 하고 있다.

농산물 교역을 보면, 2007년에는 우리나라는 멕시코로부터 약 4천 1백만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했다. 주로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커피, 맥주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전체 수입 금액에서 약 0.27%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한·멕시코 FTA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 경제권인 미국 및 중국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멕시코의 주요 수출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 협상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FTA 협상 이전에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3차례의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협상을 진행했다.

제3차 SECA 협상에서 당시 우리측은 전체 상품 교역액의 96%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양허안을 제시했으나 멕시코측은 67%에 불과한 낮은 양허안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었다. 당시 멕시코는 FTA를 지나치게 많은 나라와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멕시코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어 추가로 협상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도 협상 중단이 원인이 되었다.

2007년 7월 멕시코측은 SECA 대신 높은 자유화 수준의 FTA로 변경해 재개할 것을 희망하였다.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 :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은 협상

이에 따라 한·멕시코 FTA 1차 협상을 '0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했다. 1차 협상에서 농업과 관련해서는 상품협정문, 위생 및 검역(SPS), 원산지, 지리적 표시(GI) 분야에 대해 양측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상품협정문 분야에서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멕시코측은 농산물 수출이익의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였다.

SPS 분야에서는 멕시코측이 지역화 인정 및 분쟁해결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GI 분야에서는 멕시코측은 데길라, 메스갈 등 전통 증류주를 GI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였고, 우리측은 보호 품목의 범위를 일반 농산물로 확대하지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금년 2월 중에 개최하기로 예정했던 2차 협상은 멕시코 업계가 FTA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그 시기가 늦춰져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상품양허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멕시코측의 준비가 미흡해 다음 협상부터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주로 상품협정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안전장치로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하였다. 또한 차기 협상에서 상품양허안을 다룰 것에 대비하여 양허안 작성방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SPS 분야에서는 서로의 SPS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멕시코측은 지역화 인정, 위원회 설치 및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이 담긴 협정문 초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일단 WTO SPS 협정 이상의 내용은 포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문안은 차기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상호 입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우리측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초안을 전달하였고 멕시코측은 이를 검토해 다음 협상 전까지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다. GI 분야에서는 양측의 지리적 표시 보호 품목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멕시코측이 어떤제도적 장치를 통해 GI를 보호하는지 질의했으며, GI 보호 품목의 범위는 멕시코측이 제시한 자료 및 제도를 검토한 후 차기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3차 협상은 9월 중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세부일정은 멕시코측의 상품양허안 준비상황을 보아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우리부는 차기 협상에서 상품양허 협상이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농업 흐름 분석

1. 2007 세계식량전망

FAO발간,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번역

2. 곡물가 급등에 따른 각국의 대응

주 일본 한국대사관

3. 일본의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발전상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축산관측팀장 허 덕

4. 뉴질랜드 농업개혁 정책 및 시사점

농림수산식품부 통상협력과 사무관 김영태

5. 2008 미국 농업법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과 주무관 정명희

6. 세계농업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5월호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절제 폭음 폭식을 삼간다. 침묵 타인 또는 나에게 유익한 일 이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다. 구울 모든 물건은 위치를 정해 놓고, 일도 시간을 정해 놓고 진행한다.

결단 해야 할 일은 실행할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결심한 일은 꼭 실행한다.

절약 타인과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모색하고 낭비하지 않는다.

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 언제나 유익한 일에 힘을 쏟는다.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성실 타인에게 폐가 되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정의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중용 생활의 균형을 지키고 화내지 않으며, 타인에게 관용을 베푼다.

청결 몸과 의복, 주변을 불결하게 하지 않는다.

평정 하찮은 일, 피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평정을 잃지 않는다.

순결 타인의 신뢰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은 피한다.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2007 세계식량전망

FAO발간,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번역

■ 시장 개요

● 곡물

'07~'08년도 동안 세계 곡물 시장의 특징은 가격 인상과 변동성이었다. '08~'09 시즌에 안정의 기미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세계적 수급 불안정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곡물 시장은 곧 안정성을 회복할 것 같지 않다. 주요 곡물중에서, 2008년 수확량 증가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밀의 공급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는 수출 제한의 점진적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밀 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비교적 풍족한 세계 공급량에도 불구하고, 쌀 시장이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조곡 (coarse grain)은 밀처럼 상황이 긍정적이지 못하다. 옥수수(maize)는 올해 생산량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우려가 되고 있다. 에탄올 생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신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제 곡물 (cereal)시장 동향

단위 : 백만톤

구분	06	07추산	08예상	08변화(%)
				07대비
생산량	2,013.3	2,111.9	2,191.9	3.8
교역량	255.5	261.9	251.8	-3.9
총사용량	2,064.8	2,127.2	2,176.0	2.3
식품	994.0	1,006.6	1,002.1	1.5
사료	741.4	756.8	760.3	0.5
그 외 기타	329.3	363.8	393.5	8.2
최종재고량	427.2	408.8	421.3	3.1
1인당 소비량(kg/year)	152.3	152.4	152.2	△0.1
사용량 대비 재고비율(%)	20.1	18.8	19.5	

※ '08년은 1월~4월

□ 밀

밀 가격 상승으로 밀 재배가 늘어나 2008년의 생산량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 증가는 주로 주요 수출국에서 일어남으로써 이는 세계의 수출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으로 최근 몇 주간 밀 가격이 이미 급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밀 공급 향상으로 밀보다는 공급량이 높지 않은 조곡에 대해 밀 대체현상을 촉진할지도 모른다. 이는 밀 이용을 증가시키므로써,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의 밀 재고량이 적정 수준으로의 회복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현재 지표로 보아서는 밀 시장이 신규 시즌에는 균형에 다가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예상치 못한 생산 감소는 시장을 위협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국제 밀 시장 동향

단위 : 백만톤

구분	'06	'07추산	'08예상	'08변화(%)
				'07대비
생산량	596.7	605.1	658.0	8.7
교역량	113.1	110.0	110.5	0.4
총사용량	620.6	618.1	634.8	2.7
식품	442.3	445.5	452.8	1.7
사료	113.0	109.2	117.8	7.8
그 외 기타	65.3	63.4	64.1	1.1
최종재고량	159.5	144.5	167.6	16.0
1인당 소비량(kg/year)	67.8	67.5	67.4	0.0
사용량대비재고비율(%)	25.8	22.8	26.4	

※ '08년은 1월~4월

□ 조곡

2007년 기록과 대비하여 2008년의 세계 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 사용량은 주로 바이오 연료 사용으로 인해 생산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다음 시즌의 재고량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높은 수준의 가격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세계 교역량은 2007/08 연도에 최고 기록을 나타낸 후 2008/09의 기간에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소세는, 주요 시장에서 대체용 사료 밀이 국내에서 대규모로 공급 되면서, 옥수수과 수수의 수입량 하락으로 인한 것일 것이다.

국제 조곡시장동향

단위 : 백만톤

구분	'06	'07추산	'08예상	'08변화(%)
				'07대비
생산량	987.5	1,071.6	1,088.6	1.6
교역량	111.3	123.0	111.5	△9.4
총사용량	1,017.5	1,072.0	1,096.3	2.3
식품	179.8	182.6	185.1	1.4
사료	616.3	635.9	630.4	△0.9
그 외 기타	221.3	253.5	280.9	10.8
최종재고량	162.2	159.4	148.0	△7.10
1인당 소비량(kg/year)	27.6	27.6	27.6	△0.3
사용량대비재고비율(%)	15.1	14.5	13.6	

※ '08년은 1월~4월

□ 쌀

긍정적인 생산전망이 나온 가운데, 곧 국제 쌀 가격하락세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특히 풍작으로 정부의 무역 제한 조치 해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러할 것이다. 2008년 초반부터 가격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러 2007년의 기록적인 생산량에서 기인한, 비교적 풍부한 국제 공급 상황과 대조를 이루었다.

2008년의 더욱 낙관적 전망과도 또한 대조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세계 쌀 시장의 분명한 수급 불균형은 주로 주요 쌀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것이다. 이 중 일부는 국내 식품가격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취한 조치이다.

수출 제한 조치는 국제 가격의 대폭 상승뿐 아니라 2008년 쌀 교역량의 급격한 수축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 생산량은, 세계 재고량을 조금도 방출할 필요 없이 2008년 1인당 쌀 식품 소비의 소규모 증가를 유지해 나갈 만큼 충분할 양이다.

국제 쌀시장동향

단위 : 백만톤

구분	'06	'07추산	'08예상	'08변화(%)
				'07대비
생산량	429.1	435.2	445.3	2.3
교역량	31.0	28.9	29.8	3.2
총사용량	426.7	437.1	444.9	1.8
식품	371.9	378.6	384.2	1.5
최종재고량	105.5	105.0	105.8	0.8
1인당 소비량(kg/year)	56.9	57.2	57.4	0.3
사용량대비재고비율(%)	24.1	23.6	23.5	

※ 주요 수출국은 인도, 파키스탄, 태국, 미국, 베트남임

※ '08년은 1월~5월

● 유지종자

유지 종자의 국제 가격 인상은 2007~8년 가속화되었고, 2008년 3월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남반구에서 진행 중인 수확상태로 보아서는 국제 유지 종자 상품시장은 상당히 경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유지(oil) 공급 증가세 감소와, 박(meal)의 공급감소는 수요 확대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생산이 수요에 못 미쳐, 종자, 유지 곡물, 유지 재고 대폭 감축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유지에 대한 세계의 사용량 대비 재고 비율은, 특히 어떤 유지박 (oil meal)의 경우에는 2007~8년 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우선, 가격 상승이 유지 종자 재배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2008~9연도 예상치는 세계 유지 종자 생산의 강력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지종자와 관련 파생 상품 가격이 향후 수개월 간 안정되거나 약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재고 수준이나 사용량 대비 재고 비율의 회복이 소폭에 그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특히 유지 박(oilmeal)의 경우, 가격이 일년 전 기록 가격된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국제 유지종자와 상품시장현황

단위: 백만톤

구분	'06	'07추산	'08예상	'08/'09변화(%)
				'07/'08대비
총 유지종자				
생산량	403.3	416.0	402.7	△3.2
유지와 지방질				
생산량	148.7	151.6	154.2	1.7
공급량	167.6	172.4	176.1	2.1
사용량	145.4	150.6	155.2	3.1
교역량	72.2	76.3	80.4	5.3
사용량 대비 재고비율	14	15	13	
유지박과 오일 케이크				
생산량	101.0	105.9	101.8	△3.9
공급량	113.5	121.1	120.3	△0.7
사용량	98.5	100.8	106.1	5.3
교역량	55.7	59.0	64.2	8.8
사용량대비재고비율(%)	15	18	12	

※ '08년은 1월~4월

● 육류 및 육류제품

2008년 세계 육류 생산량은 높은 사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육류 소비가 1%미만의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개도국의 강한 경제 성장과 높은 소득 탄력성으로 인해 2008년도 육류 이용도는 3%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수입을 통해 충족됨에 따라, 세계 육류 제품 무역 또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현상은 세계 육류 수출량 대부분이 개도국으로 수출되는데, 이러한 수출량 증가분의 약 3분의 2가 개도국 자체, 주로 남아메리카 국가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FAO의 육류 국제 가격 지표는 2006년 초반 이후 매달 평균 1%씩 증가해왔고 4월에는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136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1998-2000 =100). 3월의 가격 지표 가치와 비교 했을 때, 거의 3%가 증가 한 것은 주로 가금류의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가금류는 모든 육류 제품 중에서도 사료 원료 가격 상승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품목이다.

국제 육류시장현황

단위 : 백만톤

구분	'06	'07추산	'08예상	'08변화(%)
				'07대비
생산량	271.5	274.7	280.9	1.7
쇠고기	65.7	67.2	68	1.1
가금육	85.4	89.5	92.9	3.8
돼지고기	101.7	98.8	100.6	1.8
양고기	13.3	13.7	14.0	2.0
교역량	21.4	22.5	23.1	3.0
쇠고기	6.8	7.1	7.2	1.0
가금육	8.5	9.2	9.6	4.3
돼지고기	5.0	5.0	5.3	5.2
양고기	0.8	0.9	0.8	△5.9
1인당 식품소비(kg/year)	41.6	41.6	42.1	1.1

※ '08년은 1월~4월

● 유제품

유제품의 국제 가격은 FAO의 국제 유제품 가격 지표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2007년 최고치에서 12%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지표는 여전히 2007년 4월 수치보다 25% 더 높다. 그러나 세계 우유 제품 무역이 2008년도에 또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시장이 어떠한 양상을 보일지는 불확실하다. 국제 우유 제품 무역 감소는 가뭄으로 또 다시 해당 분야의 피해를 입은 주요 6개 우유 수출국, 특히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국가들의 우유 가용량이 감소했고 유럽 국가의 경우, 생산 쿼타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가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다. 동시에 수입 수요는 주춤하고 있는데 이는 유제품 가격이 높아 졌고, 특히 여러 주요 수입국가들이 우유 생산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세계 우유 생산량은 작년의 높은 우유 생산가에 대한 반응으로 2008년도에는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낙농시장현황

단위: 백만톤

구분	'06	'07추산	'08예상	'08변화(%)
				'07대비
전체우유 생산량	664.1	676.3	693.2	2.5
탈지분유	23.4	23.7	23.8	0.6
전지분유	22.3	21.7	22.3	2.8
버터	58.4	61.2	63.2	3.4
치즈	82.5	84.3	86.3	2.3
기타	477.5	485.4	497.6	2.5
전체교역량	39.4	38.0	36.4	△4.3
1인당 식품소비(kg/year)	101.7	102.4	103.9	1.5

※ '08년은 1월~4월

곡물가 급등에 따른 각국의 대응

주 일본 한국대사관

이 글은 최근 곡물 등 식료품 가격 급등에 따른 EU 등 각국의 대응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이 발표한 08년 식료품 전망에 따르면 08년 세계 식량 수입액은 07년 대비 26% 증가한 1조 35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AO 곡물가격지수는 1998-200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금년 4월에는 284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기 대비 92% 상승하였고 08년 곡물생산량은 가격상승이 소맥 등의 증산을 촉진하여 전년대비 4% 증가한 21억 9,1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량은 옥수수 등 2억 5,180만 달러로, 자국의 식량 확보를 우선하려는 수출국의 정책선회 등으로 거꾸로 4%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의 급등으로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는 소맥과 대맥 등의 감산(減産)정책을 완전히 철폐할 방침을 굳히고 곡물류의 수입관세를 일률적으로 없애는 조치도 2009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5.21일 유럽위원회는 EU농업정책의 개혁안에서, 소맥 등의 생산조정 철폐를 제안하고, 가맹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2008년 중에 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EU는 경작지 면적의 10%를 경작 제한하여, 소맥 등의 생산을 억제해 왔으나, 장기적인 식료 가격상승 전망에 따라 생산조정을 완전히 철폐하여 유럽 내의 농가에 소맥과 대맥, 오토맥의 생산 확대를 촉진하였고 EU의 곡물류 생산량은 2007년이 약 2억 5,700톤이었으나, 유럽위원회는 생산조정의 철폐로 연간 생산량은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외의 소맥과 옥수수 등의 수입확대를 위해 당초 6월 말까지 곡물류의 수입 관세를 없앨 방침이었으나, 이를 2009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였고 EU는 시장가격을 참고로 수입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당면은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관세를 없애, 미국과 호주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조달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료품가격의 급등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수출규제의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나 아르헨티나 등의 생산국은 곡물류의 수출세를 올리기 시작했고 유럽위원회는 “수출규제는 국제적인 공급부족 상황을 악화” 시킨다는 입장에서 주요 8개국(G8) 회합과 세계무역기관(WTO)을 통하여 생산국에 수출규제의 완화를 호소할 방침이다.

식량가격고 등에 따라 주요 곡물수출국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주요 곡물수출국 · 지역의 대응

유럽연합 (EU)	곡물류의 감반을 완전철폐
	수입관세제로를 09년까지 연장
중 국	쌀 수출허가를 엄격화 할 전망
	쌀, 소맥 등 수출세를 잠정도입
인 도	고급종을 제외한 쌀 수출을 전면중지
태 국	「쌀의 수출을 제한하지 않음」이라고 상업상 표명
	쌀 생산기술협력의 대강 제안
베 트 남	6월까지 쌀의 수출을 중단
아르헨티나	대두, 소맥, 옥수수에 수출세
러 시 아	대맥 30%, 소맥 40%의 수출세 도입

일본의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발전상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축산관측팀장 허덕

1. 서론

최근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용어가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사료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수요측면에서 사료곡물의 새로운 수요인 에탄올 생산이 늘어나고, 공급측면에서는 곡물 수출국들의 자국내 물가 안정을 위한 수출제한 조치 등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료곡물 가격의 폭등과 더불어 유가도 급등하고, 운송비도 크게 상승하여 양축농가와 사료업체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양축농가에게는 사료비 상승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폐업 양축농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과 사료곡물비축제도 등 사료공급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운용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료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 잊혀졌다. 아직까지도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항구적 조치가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사료가격안정제도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사료수급상황과 사료가격안정제도 및 사료곡물비축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2. 일본의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의 개요

- 관련 사업의 종류

일본의 사료가격안정을 위한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통상보전제도와 이상보전제도가 있다.

통상보전제도는 축산물 생산비 중 배합사료의 비중이 높아 배합사료 가격 상승이 축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1963년에 창설된 민간의 자주적인 적립에 의한 보전제도이며, 이상보전제도는 통상보전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4년에 창설된 국가가 지원하는 보전 제도이다.

통상보전제도의 사업명인 「통상가격차보전금교부사업」의 사업주체는 서로 다른 계열회사인 3개 기금이다. 즉, 전농계인 회사법인 전국배합사료 공급 안정기금과 전문농협계인 회사법인 전국 축산 배합사료가격 안정기금, 상계(商系)인 회사법인 전일본 배합사료가격·축산안정기금이 그것이다.

통상 가격차 보전 기능을 가지고는 대처하기 어려운 배합사료 수입원과 가격의 비정상인 가격 상승시에 발동되는 「이상 가격차 보전금 교부 사업(이상보조전제도의 사업명)」의 경우 사업주체는 회사법인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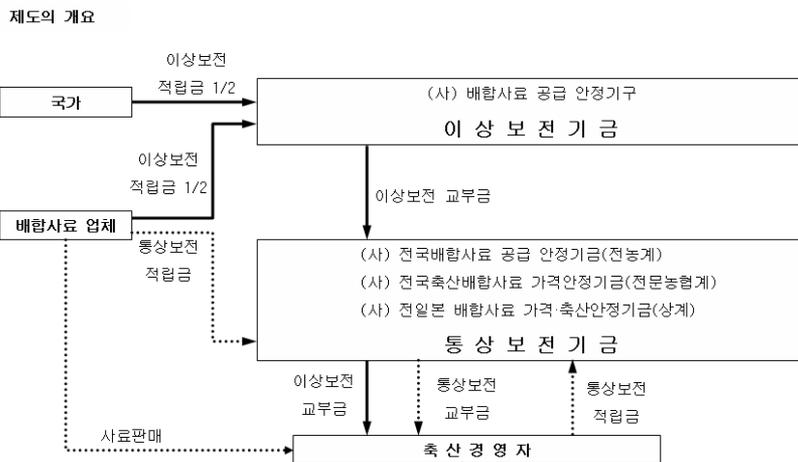
이상 가격차 보전금 교부 사업은, 배합사료 가격의 비정상인 가격 상승시에 통상 가격차 보전금 교부 사업과 같이 실시하여, 3가지 기금에 대해 각각의 기금이 이상 가격차 보전을 실시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 기금의 재원

제도의 개요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 1>과 같다. 통상보전금은 축산경영자와 농업단체 그리고 사료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기금 즉, 전국배합사료공급안정기금과 전국 축산 배합사료가격 안정기금 그리고 전일본 배합사료가격·축산안정기금에 통상적립금을 내어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재원이다.

이상보전금은 농업단체와 배합사료업체 그리고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배합사료 공급 안정기구에 기금을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재원이다. 이 중 일부는 통상보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이상보전교부금의 형태로 통상보전기금에 기금을 지원한다. 통상보전금이나 이상보전금을 지급할 시기가 되면, 통상보전을 위한 3가지 기금을 통하여 축산경영자에게 통상보전금과 이상보전금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그림 1 일본의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의 개요



※ 자료 :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홈페이지(<http://mf-kikou.lin.go.jp>)

- 보전금 산출 및 제도의 발동요건

통상 보전금은 사업에 가입한 생산자가 해당 4분기 동안 전농, 전문 농협련 또는 계약 조합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입한 사료의 수량과 해당 4분기의 계약 수량 중 적은 수량에 통상 보전금 단가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단, 기금으로 사업년도 내에 교부할 수 있는 통상 보전금의 총액 한도는 원칙적으로 전년도부터 이월된 통상 보전 준비 자산과 해당 사업 년도에 적립할 수 있는 통상 보전 적립금의 합계액이다.

통상보전금 및 이상보전금의 발동 요건 및 보전비 산출방법을 요약한 것이 아래 <표 1>이다. 통상보전금 산출방법은 이상보전의 발동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다르다. 이상보전이 발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4분기의 배합사료 가격이 직전 1년간의 평균 배합사료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 금액을 최고금액으로 하여 보전금을 교부한다. 단, 해당 4분기의 직전 1년간의 평균 배합사료 가격이 직전 4분기 배합사료 가격에서 보전금을 뺀 금액에 104%를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이 교부금의 최고액이 된다.

표 1 통상보전금 및 이상보전금의 발동 요건 및 보전비의 산출방법

구분	발동요건, 보전액	보전액 산출기준	교부시기
이상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동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4분기의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에 115%를 곱한 가격보다 높을 때 ② 해당 4분기의 보전기준액이 직전 1년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의 15%를 곱한 가격보다 높을 때 ○ 보전액 <p>해당 4분기의 수입원료 가격에서 직전 1년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에 115%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또는 해당 4분기의 보전기준액에서 직전 1년간 수입원료 평</p> 	해당4분기 종료 후	해당4분기의 다음4분기 제2월중순

구분	발동요건, 보전액	보전액 산출기준	교부시기
	균가격에 15%를 곱한 가격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		
통상 보전	○ 이상보전의 발동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4분기의 배합사료가격이 직전 1년간의 평균 배합사료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이 금액을 한도로 보전금을 교부 (단, 해당 4분기의 직전 1년간의 평균 배합사료 가격이 직전 4분기 배합사료 가격에서 보전금을 뺀 금액에 10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을 교부)	해당4분기 개시 전	상동
	○ 이상보전의 발동이 있는 경우 상기의 금액에서 이상보전금을 빼서 얻어진 금액을 한도로 보전금을 교부	해당4분기 종료후	상동

이상보전의 발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금액에서 이상보전금을 뺀 금액을 최고 금액으로 하여 보전금을 교부한다.

한편, 이상보전금은 첫째, 해당 4분기의 수입원료 가격이 직전 1년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에 115%를 곱한 가격보다 높거나, 둘째, 해당 4분기의 보전 기준액이 직전 1년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의 15%를 곱한 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동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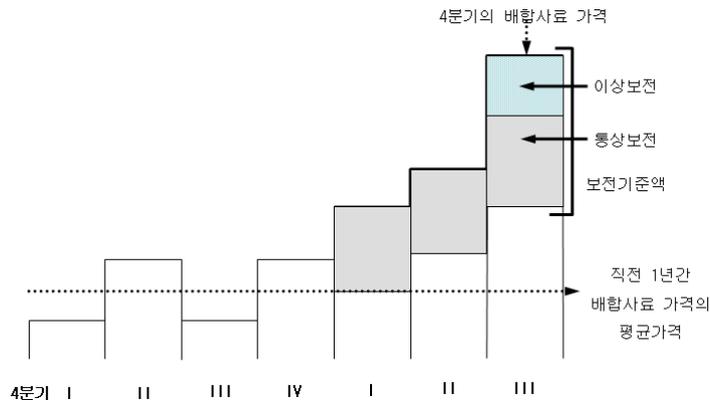
이 때 보전액은 해당 4분기의 수입원료 가격에서 직전 1년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에 115%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 또는 해당 4분기의 보전 기준액에서 직전 1년간 수입원료 평균가격에 15%를 곱한 가격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된다.

위의 설명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좌측의 I, II, III, IV분기의 평균가격 수준이 점선 화살표 수준으로 다음 분기인 1분기의 사료가격이 점선 화살표 수준의 115% 내에 있을 경우에는 사료가격과 점선화살표 수준간의 차이가 통상보전금 수준이 된다. 다음 분기인 II분기에는 직전 1년간 즉, 전년

도 Ⅱ분기부터 올해 Ⅰ분기까지의 평균이므로 점선 화살표 수준보다는 높을 것이고, 그 수준의 가격과 올해 Ⅱ분기 가격의 차이만큼이 위에서처럼 115% 이내에 있으면, 그 차액이 통상보전금이 된다. 만일 다음 분기인 올해 Ⅲ분기 가격이 직전 1년간 평균가격보다 115% 이상 높은 경우에는 115% 만큼이 통상보전 한도액 수준이며, 이 통상보전한도액과 현재가격과의 차이만큼이 이상보전금이 된다.

보전금을 교부하는 방법은 기금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다. 전농기금과 축산기금의 경우에는 통상 보전금은 기본계약 또는 수량계약을 체결한 루트와 역루트를 조사하여 기금에서 가입 생산자에게 직접 교부된다. 상계(商系)기금의 경우는 기금협회에 통상 보전금을 교부하여, 기금 협회가 가입 생산자별로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간접 교부방식이다.

그림 2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의 개념도



다음의 경우 통상 보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이미 교부한 보전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첫째, 업무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가 있었을 때 둘째, 통상 보전적립금의 납입 또는 그 외 기금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이다.

이상보전의 경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기준 수입 원료 가격이 축산물의 가격 안정제도와 관련된 안정가격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배합사료 가격 또는 이에 준하는 배합사료 가격의 평균 가격에 대응하는 수입원료 가격보다 낮을 때는 해당 수입 원료 가격을 기준 수입 원료 가격으로 간주한다. 이는 이 제도와 축산물의 가격 안정 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 제도 발동의 프로세스

이상보전의 발동을 위해서는, 우선 발동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4분기의 배합사료의 수입 원료 가격(이하 「평균 수입 원료 가격」이라고 한다.)과 기준 수입 원료 가격을 산출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수치는 평균 수입 원료 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농, 전문 농협련 및 사료업체의 해당 4분기의 배합사료 원료 사용량이다. 통상 보전과 동시에 이상 보전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사)배합사료 공급안정기구가 해당 4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파악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의 프로세스를 거쳐 발동된다. 1단계는 계약기금으로부터 기구에 보전 기준금액을 통지하는 단계이다. 계약기금은 해당 4분기 개시 전에 통상 보전금 단가를 결정하여 보전 기준액(공급 가격이 평균 가격을 웃도는 액수를 한도로 정한 금액)을 기구에 통지한다. 2단계는 기준 수입 원료 가격 및 평균 수입 원료 가격을 산정하는 단계이다. 기구는 1단계에서 이루어진 통지를 받아 해당 4분기 종료 후 신속하게 기준 수입 원료 가격 및 평균 수입원료 가격을 산정하여 이상보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3단계는 이상 보전금 단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상 보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 수입원료 가격이 기준 수입원료 가격을 15% 넘는 상승 폭(단, 보전 기준액수가 수입 원료 가격의 상승폭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전 기준액에서 기준 수입 원료 가격의 15% 상당액을 공제한 액이 한도)의 범위 내에 있고, 축산경영

의 동향, 축산물의 수급 사정, 배합사료 가격 수준의 추이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합사료의 단위 수량당 이상 보전금 단가가 산정된다. 이 단가에 대해서는 기구의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수산성 생산국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4분기의 종료 후 신속하게 결정된다.

4단계는 계약 기금에 결과를 통지하는 단계이다. 기구는 이상 보전금 단가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기금에 통지한다.

한편, 이상 보전금의 교부금액의 경우, 기구는 각 계약 기금에 대해, 해당 계약 기금의 통상 보전의 대상 수량(가입 생산자마다 계약 수량과 해당 4분기의 구입 수량 중 낮은 수량을 합계한 수량)에 이상 보전금 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을 해당 4분기의 종료 후 1개월 반 이내에 교부한다.

계약 기금은 기구로부터 이상 보전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계약 기금의 업무 방법서가 정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가입 생산자에게 그 교부를 하여야 한다.

기구는 계약 기금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상 보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이미 교부한 이상 보전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토록 할 수 있다. 즉, 이상 보전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나 기구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외 기구에 대한 업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이다. 계약 기금은 가입 생산자에 대한 이상 보전금의 교부가 완료했을 때는 신속하게 기구에 그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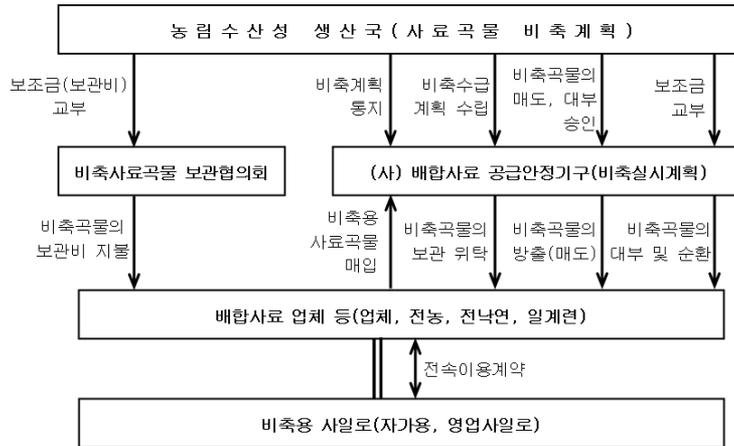
● 사료곡물 비축제도의 개요

사료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출국에서 흉작이나 수송 루트에 장애 등이 발생하게 되면, 사료곡물의 국내 수급이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에 사료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배합사료의 원료인 옥수수, 수수 등에 대해 비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사료곡물 비축대책사업 개요



농림수산성 축산국이 사료곡물 비축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사)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에 통지하고 기구는 비축실시계획을 세워 보고하면 농림수산성에서 이를 승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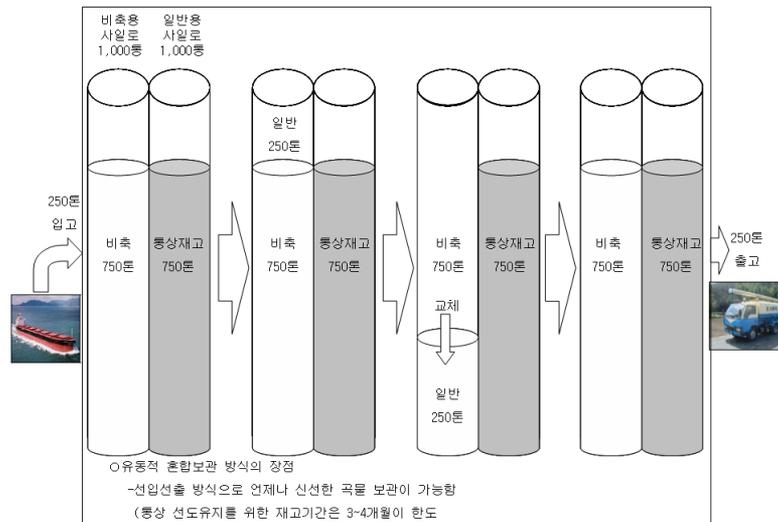
이 때 과소분은 매입하여 과다분은 매각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이들 사항도 함께 승인하게 된다.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구를 통해 배합사료 업체나 전국 농협연합회, 전국낙농연합회, 일본양계연합회 등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용 사일로에 비축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교부 또는 지불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지만, 일부는 비축사료곡물보관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1995년도에 비축 곡물의 종류 변경을 위한 교환 제도를 창설하여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사료 곡물의 종류별 사용 비율의 변화 등에 대응한 적절한 비축에 노력하고 있다.

비축 곡물의 대부(貸付)는 수입과 관련되는 운송 사정, 그 외에 내외적으로 사료 곡물의 유통 사정 악화에 의한 단기적인 수급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도에 대부 제도를 창설하였다. 그 후 1999년도에는 이 대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한층 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주원료 수요량의 대략 1개월분인 95만톤 정도를 비축하고 있다. 이 중 60만톤은 (사)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가 옥수수과 수수를 비축하고, 나머지 35만톤은 정부가 보유하는 쌀을 비축한다. 과거에는 정부 보유분도 보리를 비축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보리로 비축하던 것을 특례적인 조치를 하여 쌀로 전량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축곡물의 보관을 위탁하고 있는 배합사료업체에 대하여 별도로 사용량의 대략 1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림 4 비축곡물(옥수수,수수)의 유동적 혼합 보관방식



※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生産局畜産部畜産振興課, 消費・安全局畜水産安全管理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08년 3월

비축에 있어서 옥수수와 수수의 경우 첫째, 비축곡물은 배합사료업체 즉 비축 수탁자인 25개 업체에게 보관을 위탁한다. 보관방식은 유동적 혼합보관방식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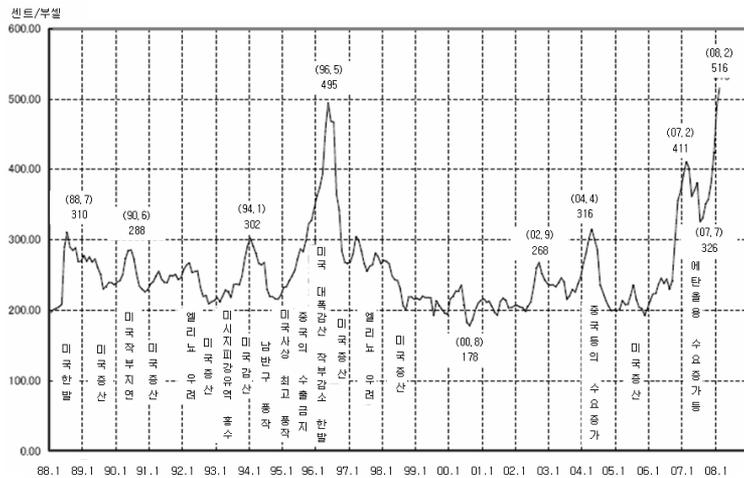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 방법은 선입선출 방식으로 언제나 신선한 곡물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곡물의 선도유지를 위한 재고기간은 3~4개월이 한도다. 둘째, 효과적인 비축곡물의 방출을 위해 전국 34개 항만지역에 60만 톤의 비축곡물을 배치한다. 한편, 정부 보유분인 쌀의 경우에는 첫째, 정부가 보관하는 쌀을 비축하는 것과 둘째, 전국의 정부지정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있다.

3. 사료가격 안정제도의 발동상황

● 사료가격 동향

국제적인 사료곡물가격 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1996년에는 미국 내의 작부가 감소한데다 한발까지 이어져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여 부셸당 495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에도 기후, 감소, 수출금지 등 주로 공급측면의 요인으로 수차례 가격의 등락이 있었다.

그림 5 옥수수의 시카고 시장 상장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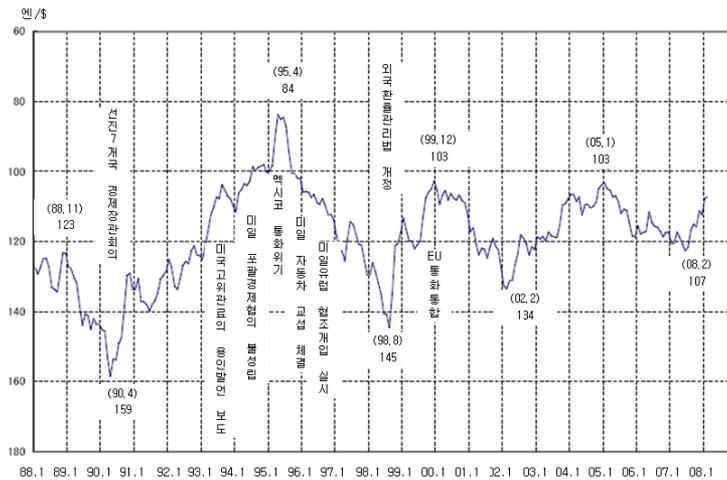


※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生産局畜産部畜産振興課, 消費・安全局畜産安全管理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08년 3월에서 일부 수정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사료곡물가격 급등의 원인이 수출국들의 수출규제와 같은 공급측 요인도 있지만, 옥수수 에탄올용 수요라는 수요측면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과거 최고 가격 수준이었던 부셸 당 495센트를 훨씬 넘어서 2008년 2월 현재 516센트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5 참조)

또한, 사료곡물을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환율변동도 사료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008년 2월 현재 엔화의 대 달러화 환율은 과거 멕시코 통화위기로 최저치(엔화가치로는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1995년 4월의 84엔/달러 이후 등락을 반복하여, 1999년 12월이나 2005년 1월에 기록하였던 103엔/달러보다는 조금 높은 107엔 정도이다. 엔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엔화로 환산된 사료용 수입 옥수수가격은 그만큼 비싸진다(그림 6).

그림 6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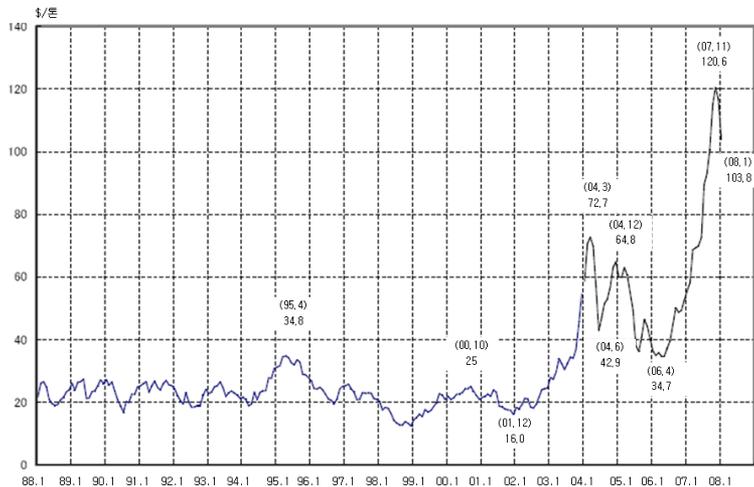
※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生産局畜産部畜産振興課, 消費・安全局畜水産安全管理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08년 3월에서 재인용

이렇게 구입된 옥수수 등 사료곡물은 배로 일본까지 수송된다. 그런데 해상운임도 크게 상승하고 있어 일본 국내로 도입되는 사료용 옥수수 가격은 더 높아진다.

해상운임 또한 2006년 1월 이후 급등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11월 톤당 120.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상승세가 다소 꺾여 2007년 2월 현재 103.8달러/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수준은 2006년 4월 34.7달러에 비해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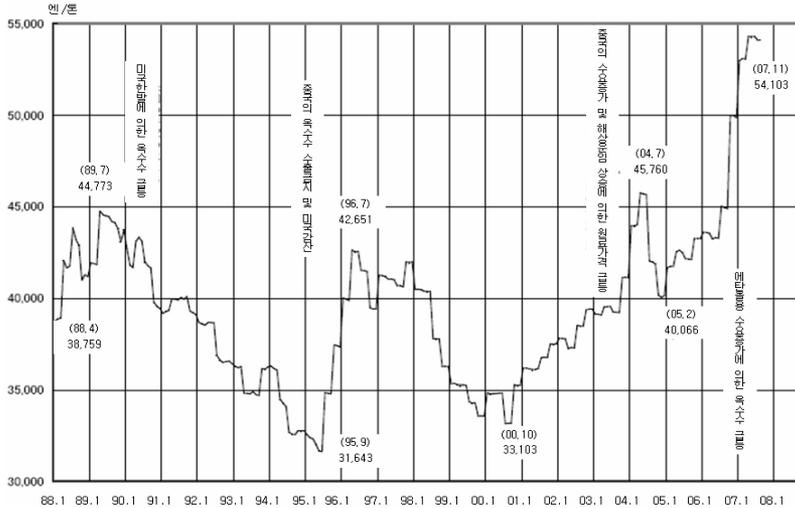
그림 7 해상운임 동향



※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生産局畜産部畜産振興課, 消費・安全局畜水産安全管理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08년 3월에서 재인용

일본 국내에 들어온 사료곡물은 사료업체에서 배합되어 공장도가격으로 출하된다. 이 가격은 국제 사료곡물 가격과 환율 그리고 해상운임을 비롯하여 관세, 업체의 마진까지 모두 반영된 가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가격은 사료가격 등락과 거의 비례하여 움직인다.

그림 8 배합사료 공장도가격 동향



※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生産局畜産部畜産振興課, 消費・安全局畜水産安全管理課, 『飼料をめぐる 情勢』, 2008년 3월에서 일부 수정

양돈용 배합사료가격을 예로 들어보면, 2006년 4월의 공장도 가격은 톤당 4만 1천 엔 정도였지만, 옥수수 시카고 상장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요인에 의해 연속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져, 2007년 5월 공장도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25% 상승한 5만 2천 엔이었다.

● 배합사료가격 안정제도 발동상황

배합사료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축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배합사료가격 안정제도가 조치되었다. 1975년 2월 배합사료 공급안정기구 설립 이래 2006년도까지 이상 보전의 발동은 모두 15분기에 걸쳐 15회가 발동되었으며, 교부한 보전금의 누계액은 약 1,600억 엔에 이른다. 최근에는 4기 연속(2006년 10~12월, 2007년 1~3월, 4~6월, 7~9월)으로 통상보전이 발동되었고, 이 중 2007년 1~3월기 및 4~6월기에는 이상보전이 발동되었다.

또한, 이러한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대처하여 2007년부터 사료구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가축사료 특별지원자금이 창설되었고, 이외에도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추진과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미이용 자원) 이용률이 낮은 자원(저이용 자원)의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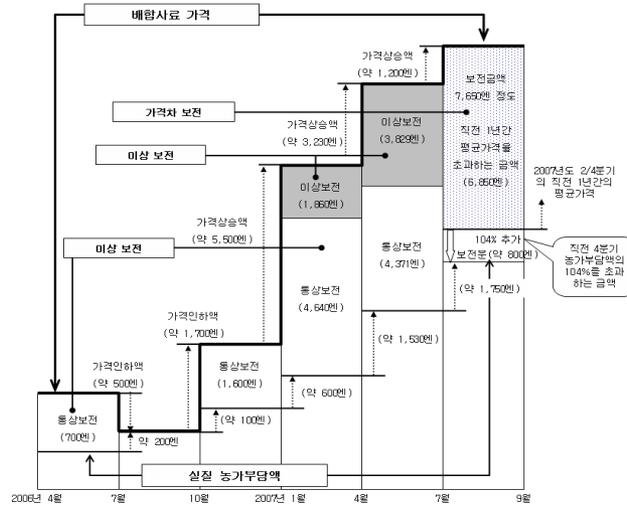
표 2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에 기초한 가격차 보전의 실시상황

단위 : 엔/톤, 억엔

연도	4분기	이상보전		통상보전		비고
		단가	액	단가	액	
2004	1	616	33	3,584	192	
	2	1,868	97	2,932	151	
2005	4			1,350	70	
2006	1			700	38	
	3			1,600	90	
	4	1,860	98	4,640	246	
2007	1	3,829	215	4,371	245	
	2	3,097	166	4,553	245	
	3			5,550	325	
	4(잠정)					가격차보전금액7,650엔/톤

※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生産局畜産部畜産振興課, 消費・安全局畜水産安全管理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08년 3월

그림 9 배합사료가격 안정제도 발동상황



※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生産局畜産部畜産振興課, 消費・安全局畜産安全管理課, 『飼料をめぐる情勢』, 2008년 3월

이전에는 2004년도 4~6월과 7~9월 배합사료가격이 급등하였던 시기에 8년 만에 통상보전과 동시에 이상보전을 연속적으로 발동한 바 있었다. 그 후 배합 사료 가격은 낮아졌지만, 2006년 1월 이후 환율이 엔이 낮아지는 경향이 반영되어 2기 연속(1~3월, 4~6월)으로 통상보전을 발동하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료곡물의 국제시장가격이 급등하고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2006년 10~12월기 이후 6기 연속으로 통상보전이 발동되었다.

또한, 2007년 1~3월기 이후 3기 연속으로 이상보전이 발동되었다<표 2 참조>. 최근의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그림 9>이다. 그림에서 2007년 7월에서 9월 까지의 부분을 예로 들어보면, 이 제도에 의해 사료가격 중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은 실제의 사료가격보다 7,650엔이나 싼 수준이다. 2006년 7월 이후 2007년 9월까지 사료가격은 11,630엔 상승한데 비해, 농가 부담분은 4,780엔만 상승하였으므로, 총 상승분 중 41.1% 만이 농가가 부담한 셈이다.

● 사료곡물 비축제도 발동상황

한편, 사료곡물 비축제도가 이제까지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응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산 미국의 옥수수가 흉작으로 인해 1996년 10월부터 1996년산이 유통될 때까지 곡물수급이 어려운 시기여서 비축곡물을 대부의 형태로 방출한 바 있다. 1998년 6월부터는 강우량 감소에 따라 미국에서 일본으로의 사료곡물 유통 대동맥인 파나마운하에서 장기간 저수위 상태가 계속되어 운송사정이 악화되자 비축곡물을 방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05년 9월부터 미국 사료곡물 주요 수출항인 뉴올리언즈를 하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함으로써 사료곡물 수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사료곡물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자 비축곡물을 방출한 바 있다.

이 때부터 방출된 물량은 2007년 3월까지 지속되었지만, 2006년 이후 국제 사료곡물가격 상승 이후 새롭게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아 2008년 2월 현재 아직까지는 새로운 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로 대출한 실적을 보면, 1998년도까지 684천 톤, 1999년도부터 2007년 3월말까지 1,376천 톤으로 합계 2,060천 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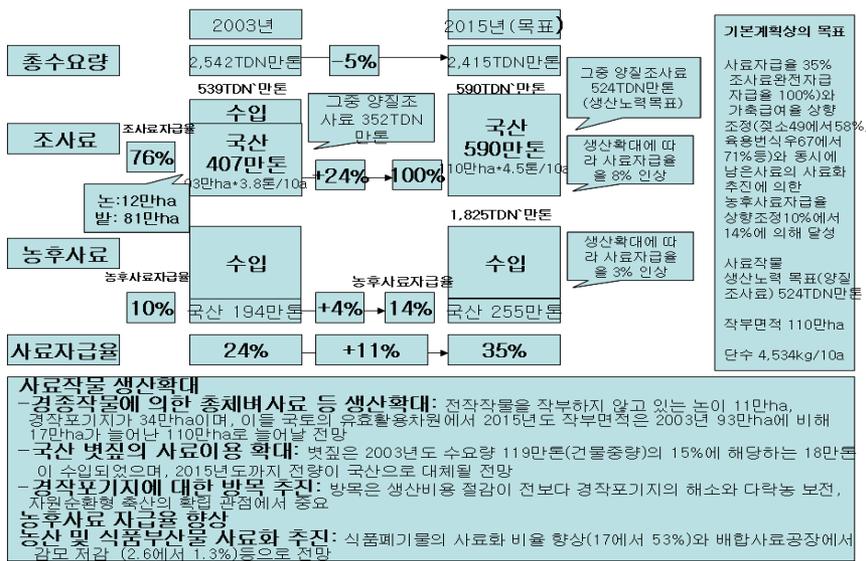
4. 일본의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

일본은 이번 사료곡물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부터 사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4년도를 비롯한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을 수차례 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사료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급등하자 관련 조치들에 대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와 사료곡물비축제도가 사료가격 안정 및 농가부담 경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외에도 해외 사료자원 개발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식량 자급률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총체 벼(벼 WCS : 벼 whole crop silage)의 증산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총체 벼 생산 확대를 위해 지침사항으로 (1) 수급 맵 작성, 네트워크 구축, 자급사료생산자와 이용자의 중개 및 알선, (2) 작부증산 중점 활동, (3) 총체 벼 코디네이터(조사료 전문가) 육성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일본의 사료 자급률 및 생산노력 목표의 틀



※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生産局畜産部畜産振興課, 『飼料作物 關係資料』, 2005년 3월(内部資料)에서 일부 수정

또한 사료정책의 일환으로 총체벼 조사료 작부 확대 이외에도, 국산 벼짚 이용 확대, 방목 추진, 외부화 추진 등 4가지 카테고리로 정책을 나누어,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한 지침사항과 실시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산 벼짚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사료용 벼짚의 경종농가 공급 가능량 및 축산 농가의 수요량 등 의향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에 기초한 국산 벼짚 수급맵 작성, 해당 맵에 기초한 벼짚 수집 공급확대를 위한 중개·알선 활동 등을 전개하고, 지역 내 자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광역 유통을 위한 지역간 조정 등 의견 교환회를 개최

한다든지, 블록마다 지역간 조정 등 회의를 개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방목추진이란 주로 농기계가 들어가기 곤란한 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한 곳에 소를 방목하여 기르는 것을 말한다. 방목을 추진하기 위해 방목 이용 가능지와 방목지 임차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방목이용 가능지 맵을 작성한 뒤, 해당 맵에 기초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목이용 추진을 위한 중개·알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작포기지 해소와 동물피해 방지 등 지역 활성화의 방목이용 효과를 구명하여, 방목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방목회의 등도 개최하고 있다. 외부화 추진은 기계화하여 조사료의 수확 등을 담당하는 경종과 축산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전문조직체(컨트랙터)를 구성하여 육성하고 있다. 조사료의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의향 조사 실시와 조사결과에 기초한 작업 수위탁을 위한 수급맵을 작성하고, 해당 맵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구축과 작업 수위탁 추진을 위한 중개·알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컨트랙터 육성에 관한 전문가(컨트랙터 어드바이저) 육성을 위한 양성강좌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후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산부산물 및 식품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자급사료를 만들어 공급하는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산 및 식품부산물 등을 남는 자원의 재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에코피드라 부른다. 2006년도의 경우 농산 및 식품부산물의 발생량이 연간 1,135만 톤 정도로 추계된다. 이 중 약 59%인 671만 톤 정도가 재이용되며, 그 중 사료로는 37%(전체의 약 22%) 정도가 이용되고 있다. 사료화되고 있는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식품제조업에서 45%, 식품도매업에서 41%, 식품소매업에서 23%, 외식산업에서 23% 정도 된다. 그렇지만, 나머지의 대부분은 소각 내지 매립 처분된다.

비료화 등에 재이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사료로 이용이 가능한 품질이 좋은 것들이 많다. 농산 및 식품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할 경우 안전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다른 업종으로부터 신규로 진입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농산 및 식품 부산물 이용 사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06년 8월 30일부로 통지하였다.

5. 시사점

일본에서는 사료안정기금이 있어 위급상황에서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곡물가격 급등 시 사료안정기금의 설치가 제안되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사료안정 기금을 설치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사료업계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지만, 사료원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재 농가부담 증가로 사료안정기금의 설치가 어렵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은 자조금과 같이 매칭펀드 형태로 하되, 정부가 먼저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생산자나 사료업계의 공동 조성분은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설정하여 사료가격 안정 후 조성하는 '조건부 유예방식'의 기금설치를 제안한다.

국내의 농산부산물(대두박, 땅콩박 등)이나 식품부산물(제빵분, 두부박 등)을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사료 공급기반 확대를 유희지에 사료곡물을 적극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료자원의 공급을 한나라에 의존하기보다는 동남아 등으로 사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해외사료 곡물재배 농장 및 관련 업체 지원 등을 통해 해외에서 사료작물 자원을 개발하여 수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옥수수, 콩, 밀 등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하며,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은 물론 업계 전체의 이해를 도모하여 협조체제를 끌어낸다는 점은 배울 만하다. 이런 측면에서 업계 내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계 조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생산비 조사 시 분뇨처리비 등의 항목을 구분한다거나, 모든 두당 출하두수(MSY)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폐사율 또는 폐사두수 통계를 병기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 홈페이지(<http://mf-kikou.lin.go.jp>)

뉴질랜드 농업개혁 정책 및 시사점

농림수산식품부 통상협력과 사무관 김영태

뉴질랜드 경제 개혁은 경제 전반에 걸쳐 동시에 추진되어 산업별 개혁이나 부문별 규제완화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 있다. 농정개혁도 이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농업 보조금 철폐에서 부터 시작하였지만 단지 보조금 문제만은 아니었다.

뉴질랜드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왜곡요소가 커서 개혁의 대상이 되었지만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 개선으로 농업부분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의 가족농 형태이고, 식량 자급율과 농업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급격한 개혁의 동기 부여가 쉽지 않으며, 농업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형태라서 보조금의 본질이 다르고, 식량 자급율이 낮은 상황에서의 보조금 철폐는 경쟁력이 약한 주요 곡물의 자급율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조금 철폐 등으로 탈락한 농가를 양산(농가 수 뉴질랜드의 19.5배, 2005 기준) 할 경우, 구조조정 비용 뿐만 아니라 사회

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점진적 농정개혁과 구조개선 및 조정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1. 뉴질랜드 농업개혁 개요

뉴질랜드는 1984년 농업 개혁을 통해 현재 OECD 국가 중 농업 보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농업 관련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참고로, OECD 농업 보조율(PSE¹)을 보면 뉴질랜드는 2.6%, 한국은 63.0%, OECD 국가평균은 29%이다. 농업부문 GDP 기여도도 뉴질랜드 15%에 달하고 있지만 한국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수출액 중 농림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뉴질랜드는 65.9%에 달하지만 한국은 0.8%(‘05기준)에 불과하다.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핵심은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과감히 축소 및 철폐하고,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농업 경영을 농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김에 따라 시장 지향적인 경쟁구조를 구축하였으며, 국제시장에서의 뉴질랜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2. 농업개혁 배경

1840년 영국의 지배 이후 뉴질랜드는 양모를 영국에 공급하고 냉장운송이 가능해진 19세기 후반부터 육류와 유제품을 영국과 영연방에 수출하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하였다 (1950년대 1인당 GNP가 세계 5위)

1) PSE (Producer Support Estimate: 생산자지지추정치) : 현재 시행 중인 농업 정책의 중단 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수입 손실액을 지칭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외부충격으로 뉴질랜드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1966~1968 세계 양모가격이 40%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1973년 영국의 유럽공동체(EC) 가입으로 뉴질랜드산 농산물이 영국시장에서 누리던 시장 접근 특혜가 폐지됨과 동시에 1970년대 2차에 걸친 오일쇼크로 촉발된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제조업 부문의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였다.

뉴질랜드 정부는 1963년부터 운송과 비료 가격 보조를 실시하였고, 1978년에는 최저가격 지지정책(SMP²⁾)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오히려 비료 보조 및 가축두수 확대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 등으로 과잉 생산을 유발하여 농산물 가격은 더욱 하락하였고, 1980~84년에 연평균 정부보조는 가격보조 2억900만 NZ달러 등 총 7억 7,200만 NZ달러를 기록하여 농업 GDP 대비 33%에 이르는 등 농업분야의 정부 지원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 2004년 우리나라의 보조금 비율 : 농업 GDP 대비 18.6%

1982년 뉴질랜드 최대 농립단체인 '뉴질랜드 농민연합(Federated Farmers of NZ: FFNZ)'은 농업보조로 인한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며, 보조의 증대가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고, 농가에 대한 보상보다 인플레이션 자체를 잡는 정책에 우선을 둘 것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3. 농업개혁 내용

1984. 7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정치·경제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에 착수하여 시장 지향형의 경쟁구조를 지향, 사기업 및 정부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

2) SMP(Supplementary Minimum Prices) : 국제시장가격보다 정부의 최저지지 가격이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 보전, 주로 축산업에 적용

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전경제 분야에 걸쳐 개혁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금융시장에서 이자율과 환율에 대한 여러 규제들이 철폐되었고, 상품 시장에서는 농업보조, 수출보조, 수입허가제를 철폐하고 관세율을 감축하였다. 1999년까지 지속된 관세감축으로 뉴질랜드가 수입하는 95%가량의 상품(수입액 기준)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농업개혁은 농업보조의 철폐로부터 출발하였는데 당시 주된 농업보조인 자본, 비료, 잡초제거와 같은 투입재 보조와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조는 1984년과 1987년도에 각각 폐지되었고, 농가에 허용된 토지개발 특권과 축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도 개혁대상이 되었다.

축산부분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보조비용(기간 평균)

단위 : 백만 NZ달러

	1980~84	1985~90	1991~95	1996~98
보조총액(A)	772	677	116	115
평균 농업 GDP(B)	2,356	3,619	4,660	5,052
A/B	32.7%	18.7%	2.5%	2.3%

※ 보조내용 : 가격보조, 비료보조, 이자율보전, 검사·상담·연구·검역서비스 등

육류검사, 가축전염병 예방 등 정부가 농업인에게 제공하던 품질보증 서비스에 대해 그 소요비용을 회수하는 체제로 전환하였고, 1994년에는 농가상담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농업 관련 정부 조직의 개혁도 단행되었다. 농수산부의 조직 및 기능이 개편되어 개혁 전 10개국 5,600여명(1984)에서 개혁 후 2,400여명으로 감축하고, 기업에 대한 기준 제시 및 감독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였고, 품질인증 및 검사업무는 사용

자 부담으로 전환하였으며, 모든 농업 관련 연구는 왕립연구기관(Crown Research Institute)으로 이관하여 경쟁체제하에서의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여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도 단행되었다. 운송, 임업, 금융, 관광, 수도·전기 등 24개 정부 소유 기관이 기업화 또는 민영화되면서 농업에 대한 각종 서비스도 시장원칙 또는 경쟁 체제로 변모하였다. 반면에 1989년 민영화된 농촌은행은 인수 기업의 사업에 통합됨으로써 그 원래 기능과 정체성이 약화되고 말았다.

4.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

1980년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던 농지가격이 1988년까지 실질가격 기준으로 50% 가량 하락하였는데 이는 농지에 자본화된 보조가 철폐된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금융규제완화로 이자율이 10→20%이상으로 오른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으나 농지가격 급락은 농가의 자산가치 하락을 의미하며, 부채 규모가 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농가부채 재조정(debt restructuring)을 추진하였는 바, 농촌은행을 통해 일부 농가의 빚을 탕감해 주고 금융, 법, 농장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용중재(credit mediation) 과정을 거쳐 농가와 은행사이의 협상으로 생존 농가를 결정한 결과 농업부문 전체 부채의 20%가 탕감되었고, 5%의 농장이 매각되었다. 당초 10% 정도의 농가가 농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농가의 1%에 해당하는 800농가 만이 농업을 포기하였다.

회복된 농가들은 경영규모의 조정, 농업활동의 다각화, 농업 관련 지출 또는 농가 소비의 감축, 농외소득의 추구, 고용조정, 농업 경영의 최소 유지 등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했고, 부채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가에는 기존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한 퇴출지원 조치 아래 새집, 자동차, 가구 등이 제공되었다.

5. 농업개혁의 성과

우선 농업 보조 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OECD가 추계한 농업보조(PSE)가 20.3%('86)에서 2.8%('90) 감소하였다.

농업 보조율(PSE)

단위 : %

	1986	1990	1994	1998	2002	2005
뉴질랜드	20.3	2.8	2.3	1.6	1.5	2.6
한 국	65.3	74.5	73.1	56.5	65.3	63.0

전통적 농업부문의 약화와 더불어 양, 소 등 목축분야 중심 농업에서 낙농, 원예, 화훼, 과수, 양봉 등으로 농업의 다각화가 촉진되고 있다. 보조 철폐에 따른 비용 상승과 시장 가격 하락으로 1985~1995 전체 가축 사육두수 12%, 양 사육두수 30%가 감소하였고, 1970년대부터 확산된 사슴 사육과 원예작물 생산의 규모화가 진전되었다.

- ※ 사슴 사육두수 : 1,031천두('90) → 1,223('95) → 1,494('00) → 1,705('05)
- ※ 주요 품목의 생산 비중 변화(1983 → 2003)
양모 14.8% → 5%, 낙농 23.2% → 29%, 원예 8.6% → 15%

농업부문의 성과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농산물 수출액이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였는 바, 양모와 육류는 상품 전체 평균의 증가 폭보다 낮은 반면 임산물과 낙농품은 평균보다 상회하였고, 주요 수출 품목인 쇠고기, 양고기, 낙농제품, 양모, 사과 등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 졌다.

양고기는 세계 전체 수출시장의 38%, 쇠고기는 5%를 점유하는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낙농제품 중 가장 대표적인 분유도 1984년 개혁 이후 가격 경쟁력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모와 사과도 호주와 국제 평균가격에 비해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6.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의 시사점

뉴질랜드 농정개혁은 경제 전반에 걸쳐 동시에 추진되어 산업별 개혁이나 부문별 규제완화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민단체가 보조철폐를 스스로 제안하고, 규제개혁을 받아들인 이유는 공급 왜곡을 줄임으로써 농자재인 수입 공산품의 관세인하로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항구와 철도의 상업적 관리를 통해 수출 농산물의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개혁 초기의 고통, 중기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에 생존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동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 개혁 후 3년동안 농업부문은 농가 소득의 감소와 농지 가격의 하락을 견뎌야 했으며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정부에서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 농정개혁은 정부의 시장간섭으로 나타난 왜곡과 부문간 불균형을 줄이고, 시장 영향력과 경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유화와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로써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뉴질랜드 농정개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농산물의 생산여건이 상이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뉴질랜드는 농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주요 수출국이다. 천혜의 농업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농가는 자산 규모가 큰 기업농 형태로써 외부 환경에 빠르게 반응하

고,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 개선으로 농업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으며, 무역 자유화 확대로 수출 환경이 개선되어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농가의 수익성 향상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

한국과 뉴질랜드 농가구조 비교

	경지면적(ha) (국토면적대 비율)	농가수(호)	호당 경지면적 (ha)	비고
뉴질랜드	15,305천 (56.9%)	65천	235	2005기준
한 국	1,824천 (18.3%)	1,273천	1.43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이 낮은 주요 수입국으로 농업분야의 경쟁력이 낮다. 협소한 농지와 기후특성 등으로 대부분의 농가는 소규모 가족농 형태로 농외 소득원이 제한되어 있고, 농업인의 직업 전환이 용이하지 않아 농정개혁에 대한 농업계의 동참 인센티브를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뉴질랜드는 보조금 철폐로 인해 파산 위험에 처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을 시행하였고, 농업을 포기한 1%의 농가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한 퇴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 수가 뉴질랜드 보다 19.5배 많고(2005 기준),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농정개혁으로 탈락한 농가를 양산할 경우 구조조정 비용이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며, 뉴질랜드 경우처럼 단기간에 농지가격의 급락 같은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을 예상된다.

보조는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와 같은 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 측면에서는 시장 실패를 바로 잡는 바람직한 조치로 인식되기도 한다.

뉴질랜드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왜곡 요소가 컸지만, 우리나라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형태라서 보조금의 본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뉴질랜드 품목별 생산대비 수출비율

1984년 양고기 78%, 쇠고기 42%, 양모 40%, 키위 50%

2005년 사슴고기 96%, 유제품 95%, 양모 89%, 쇠고기 82%

특히, 뉴질랜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이 낮아 식량 안보 확보를 농정의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철폐 등으로 경쟁력이 약한 주요 곡물의 자급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우리나라는 약 70%가 WTO 허용보조임

총 69,438억원 중 허용보조 49,210억원, 감축대상 20,228억원('04기준)

뉴질랜드 농업개혁을 통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려면 농가와 정부 수준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제고,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경쟁력 증대 등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으나, 우리 농업 여건을 감안할 때 뉴질랜드 방식의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개혁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점진적 농정개혁과 구조개선 및 조정을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1 뉴질랜드의 농축산물 수출현황

- 농산물 수출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
 - 주요 수출 증가 품목: 낙농제품, 사과, 배, 곡물, 종자 등

단위 : 백만 NZ달러

	1983	1984	1987	1990	1995	2007
육류	1,871	1,705	2,263	2,335	2,664	4,953
생축	60	61	153	194	141	156
쇠고기	720	635	1,025	1,092	1,161	1,815
양고기	981	994	1,094	1,094	1,197	2,522
낙농제품	1,497	1,427	1,763	2,534	3,473	8,405
버터	658	562	510	711	726	1,121
치즈	194	236	277	341	605	1,238
전지분유	203	189	335	444	905	2,290
양모	1,053	1,166	1,677	1424	1,332	943
축산물 소계	4,869	4,786	6,642	7,318	8,513	14,457
키위	87	126	432	539	321	758
사과,배	61	89	128	218	491	318
곡물,종자	66	108	131	194	535	651
농산물 총계(A)	5,203	5,306	7,580	8,784	10,815	18,682
총수출(B)	7,503	8,366	11,724	14,525	20,200	33,493
비율(A/B) %	69.3	63.4	64.6	60.5	53.5	55.8

※ 자료 :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MAF

참고 2 농림수산업 취업자 수의 변화

단위 : 명

	1986	1991	1996	2001	2004
농림수산업(A)	161,634	142,113	157,563	142,758	167,000
국가전체(B)	1,499,421	1,400,400	1,630,812	1,727,271	1,856,000
비율(A/B)	11%	10%	10%	8%	9%

※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참고 3 가축 사육 두수 변화

○ 양은 사육두수가 감소한 반면, 육우, 비육우, 사슴 사육두수는 증가함

단위 : 백만두

	1983	1984	1987	1990	1993	1995	2005
양	70.3	69.7	64.2	57.9	50.3	48.8	39.9
젖소	3.1	3.2	3.2	3.4	3.6	4.1	5.1
비육우	4.5	4.5	4.8	4.6	4.8	5.2	4.4
사슴	0.2	0.3	0.5	1.0	1.1	1.2	1.7
염소	0.2	0.2	1.1	1.1	0.4	0.3	?

※ 자료 :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MAF

참고 4 농산물 생산액의 변화

- 농업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 농지 이용이 양, 소사육 농가에서 낙농, 원예, 채소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생산액이 개혁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단위 : 백만 NZ달러

	1983	1984	1987	1990	1993	1995
양모	755	935	1,226	1,252	737	933
양고기	499	518	646	865	1,037	1,120
쇠고기	717	720	974	1,187	1,559	1,394
낙농제품	1,183	1,198	1,212	2,166	2,536	2,585
돼지	86	89	110	125	134	140
닭고기,계란	146	143	179	215	207	237
곡물,종자	267	286	307	338	343	370
과실류	213	238	531	623	728	636
채소류	225	274	324	412	450	485
생축	558	743	607	721	884	626
기타	440	755	707	1,380	1,520	1,720
계	5,092	5,900	6,822	9,284	10,135	10,246
GDP비중	6.8	7.0	5.5	6.4	5.8	5.2

※ 자료 : Situation and Outlook for New Zealand Agriculture, MAF

참고 5 농림산물 수출액 점유율

단위 : 백만 NZ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상품전체 수출액(A)	29,168	27,504	29,714
농림축산물 수출액(B)	17,372	18,315	19,579
B/A	59.6%	66.6%	65.9%

참고 6 한국과 뉴질랜드의 농업 비교

항 목	뉴질랜드(2005)	한국(2005)
경지면적	○ 국토면적 : 26,868천ha ○ 경지면적 : 15,305천ha (국토면적의 56.9%)	○ 국토면적 : 9,965천ha ○ 경지면적 : 1,824천ha (국토면적의 18.3%)
인구	○ 4,136 천명	○ 48,138 천명
호당 경지면적	○ 235ha	○ 1.43ha
농업취업자	○ 167천명 (전체 취업자 대비 9.0%)	○ 1,747천명 (전체 취업자 대비 7.6%)
농가수	○ 65천호	○ 1,273천호
농가소득	○ - 천원	○ 30,503천원
농업생산액	○ 85.39억NZ달러 (GDP의 6.1%, '04)	○ 369억달러 (GDP의 3.0%)
농림축산물 교역	○ 수출 : 19,579백만NZ불 (전체의 65.9%) ○ 수입 : 2,355백만NZ불 (전체의 8.1%)	○ 수출 : 2,222백만불 (전체의 0.8%) ○ 수입 : 11,889백만불 (전체의 4.6%)

2008 미국 농업법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과 주무관 정명희

2008 미국 개정 농업법이 수년간의 진통을 겪은 후에 2008년 5월 30일 상·하원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2005년부터 미국 내 각 계의 의견을 수렴, 농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등 여러 가지 난항을 겪어 발표된 2008 개정 미국 농업법을 WTO/DDA농업협상 국내보조 분야와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 사업별로 정리하였다.

1. 2008 농업법 주요 내용

2008 농업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은 총14개 부문 (Tit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 농업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농가의 소득 안전망 및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식품, 보전, 무역, 영양, 신용, 농촌개발, 에너지, 산림, 재해보험 등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5년('08~'12년)동안 3,070억달러를 지원함으로써 기

존의 농업법보다 약 370억달러(약 37조원)를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영양관련 사업 약 2,090억달러, 작물관련 사업 약 350억달러(전체예산의 11.4%), 보전관련 사업 250억달러

2. 주요 사업 내용

가. 수입보전직불제(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 ACRE)

ACRE(신설된 제도)는 생산자가 속한 지역(state)의 수입수준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9년(수확년도 기준)부터 실시 예정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는 ACRE는 가격 차이만을 고려하여 농가의 수입을 지지하지 못하는 가격보전직불제(Counter-Cyclical Payment : CCP)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이다. 다만, CCP제도는 계속 유지되어 생산자가 두 가지 제도 중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보전직불제와 가격보전직불제 비교

구 분	ACRE	CCP
수혜대상	- 모든 품목의 생산자	- 밀, 식량작물(feed grains), 면화, 쌀 유지류(oilseeds) 생산자
지급기준	- 수입 기준	- 가격 기준
발동기준	-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발동 · 주단위 실제수입*이 주단위 보장수입*보다 적어야 함 · 농가 실제 수입*이 농가 보장수입*보다 적어야 함 - 즉,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	-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유효가격(고정직접지불금+시장가격또는 용자단가 중 높은 것)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때 발동 - 즉, 목표가격 이상의 가격을 보장

구 분	ACRE	CCP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당 수입이 크게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지원 - 다만, 직접지불금 20%와 유통지원 융자(marketing loan)의 30%를 포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생산량(actual yield)과 연계되지 않아 농업인의 소득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이 급락하면 보조금을 과다 지급 하게 되고,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지급액이 "0"이 될 수 있는 등 정부의 예산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음

※ 주 단위 실제수입 : $100\% \times \text{주단위 당해년 단수} \times (\text{연평균 국내가격과 용자단가의 } 70\% \text{ 중에서 높은 것})$

※ 주 단위 보장수입 : $90\% \times \text{주단위 기준 단수}(5\text{개년 올림픽 평균단수}) \times \text{보장 가격}(2\text{년 평균 국내가격})$

※ 농가 실제 수입 : $100\% \times \text{농가 당해년 단수} \times (\text{연평균 국내가격과 용자단가의 } 70\% \text{ 중에서 높은 것})$

※ 농가 보장 수입 : $100\% \times \text{농가별 기준 단수}(5\text{개년 올림픽 평균 단수}) \times \text{보장 가격}(2\text{년 평균 국내가격})$

나.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

직접지불제는 199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생산량이나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전 정책이며 대상품목(9개품목)* 및 지급단가를 기존의 농업법과 동일하게 책정하는 등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다.

*대상품목(9개 품목) :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면화, 쌀, 대두, 기타유지류

다. 유통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s) 및 융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s)

용자단가를 정해 놓고, 용자단가에 의해 융자를 받고 시장가격 또는 국제가격이 용자단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상환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써 일부품목(밀, 보리, 귀리, 유지류, 양모, 꿀)의 용자 단가를 인상(붙임2 참조)하여 해당 품목 생산자들의 소득 안전망 강화하였다.

라. 재해 보전 사업(Disaster Program)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일정정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총 38억5천만달러의

기금을 조성, 향후 5년동안 기존의 작물재해 보험사업 등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마. 낙농 사업(Dairy products Program)

우유(manufactured milk)에 대한 가격지지 방법을 변경, 정부는 최저 가격으로 관련 품목을 구매 하여 가격을 지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우유 한 품목에 대해서 정부 구매를 통해 가격지지(100파운드당 \$9.9)를 하였지만 체다치즈, 버터, 무지방 분유를 개별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여 우유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확대 하였다.

바. 설탕 보조 사업(Sugar Program)

2010년부터 설탕 원료(raw cane sugar) 및 조제설탕(refined beet sugar)에 대한 용자 단가를 각각 0.75cents 인상하여 18→18.75cents, 22.9→24cents로 조정함으로써 설탕에 대한 가격지지를 확대하였다. 또한, 수입량과 무관하게 설탕에 대한 국내 소비량의 최소 85%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설탕으로 사용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주요 사업 평가

가. 수입보전 직불제(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 ACRE)

수입보전 직불제는 가격보전 직불제(CCP)와 같이 WTO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참여 희망자가 많고 해당 품목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ACRE 보조 수준이 WTO에서 규정한 감축대상 보조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옥수수, 밀, 대두의 가격이 각각 부셸당 \$7, \$5, \$12로 하락할 경우 단지 3개 품목에 대한 보조가 약 80억달러 수준까지 예상된다.

* 옥수수, 밀, 대두'08.4월 현재 과거 6개월간 평균은 부셸당 각각 \$8.9, \$8.7, \$16.4

DDA협상 결과에 따른 미국의 감축대상보조 한도 추정

감축기준	감축수준	이행말 한도
191억달러	50~60%	96~76억달러

나.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

직접지불제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종류, 생산량 등과 무관하게 고정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작물을 밀, 옥수수, 보리, 사탕수수, 쌀, 면화 등에 한정(채소, 과수 등은 제외)하고 있어 향후 브라질, 캐나다 등 회원국이 감축대상 보조 분류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허용보조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함

다. 유통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s) 및 융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s)

융자단가 수준으로 최저가격을 보전해 주는 가격지지 정책으로 WTO규정상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되며, 밀, 보리 등 일부 품목의 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사업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 감축대상 보조 한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재해 보전 사업(Disaster Program)

재해보전 사업 중 일부 사업이 허용보조 요건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지만 현재는 허용보조로 분류되고 있다.

허용보조 요건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8항 (a))	작물 재해 보험 (Crop Disaster Program)
자연재해구호 지불은 이전 3년간 또는 이전 5년 기간 중 최고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생산의 30%를 초과 하는 생산 손실이 있을시 지급	품목의 손실이 생산액의 35%를 초과하거나 품질(quality)손실이 205 이상시 지급

허용보조로 분류되고 있는 재해보전 사업은 금번 농업법 개정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여타 회원국이 면밀한 검토가 예상 되는데, 향후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 되어 감축대상 보조 한도에 부담이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 낙농 사업(Dairy products Program)

우유 단일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체계를 우유 관련 제품에 대한 개별 보조 체계로 변경함으로써 우유에 대한 감축대상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은 우유에 대한 보조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포괄적 의미인 '낙농(dairy)'에 포함시켜 통보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통보 향방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바. 설탕 보조 사업(Sugar Program)

정부는 자국내에서 초과생산 되는 설탕을 1파운드당 23cents로 구입, 에탄올 생산자에게 1파운드당 3cents로 판매하며, 이것이 WTO 규율 위배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미국에 에탄올을 수출하려는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DDA협상에 미치는 영향

우선, 2008개정 농업법은 DDA협상 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DA의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국내보조 분야에서의 미국의 신축성이 요구*되지만, 2008 농업법은 농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DDA협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 시장접근분야에서 EU의 신축성, 국내보조분야에서 미국의 신축성, NAMA분야에서 브라질, 인도 등 강경 개도국들의 신축성이 뒷받침 되어야 연내 타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08 개정 농업법은 협상 주요국들이 주요 쟁점에서 자국의 입장을 고수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DDA협상이 더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WTO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사업중 허용보조 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 일부 주요 프로그램(예:재해 관련 프로그램)을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하지 않고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있어 WTO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은 DDA협상 타결의 결과물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산을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미국 농업법은 곡물가격 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협상 주요국은 미국의 보조금 증액은 현재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곡물가격 인상을 부추키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브라질, 인도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미국의 농업보조금이 저렴한 인건비로 생산된 자국의 낮은 가격의 곡물에 대한 대 미국 수출 및 무역자유화를 저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붙임 1

2008 농업법 개정 추진 경과

- 미국 행정부는 '07년 농업법 개정을 위해 '05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
- 2007.1.31 미농무부 2007 Farm Bill 제안서 제출
- 2007.7.27 미하원, 2002 농업법과 유사 법안 통과
- 2007.12.14 미상원, 2002 농업법과 유사 법안 통과
- 2008.1월 이후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2008 농업법 논의
- 2008.5.14 미하원 2008 농업법 의결, 5.15 미상원 의결
- 2008.5.21 미 부시대통령 거부권 행사
- 2008.5.23 미 의회 재의결
 - * 15개 Title중 행정적 실수로 무역Title 누락되어 14개 Title만 통과
- 2008.5.30 하원 무역Title 포함한 농업법 의결(찬성306,반대110), 상원 의결(찬성 77,반대15)

붙임 2

직접지불제 지급단가

품목	단위	지급단가 (2002-2007,\$)	지급단가 (2008-2012,\$)
밀	bu	0.52	0.52
옥수수	bu	0.28	0.28
수수	bu	0.35	0.35
보리	bu	0.24	0.24
귀리	bu	0.024	0.024
면화	lb	0.0667	0.0667
쌀	cwt	2.35	2.35
대두	bu	0.44	0.44
기타유지류	cwt	0.80	0.80

※ 1bu(부셀)=27.2kg(밀,콩), 25.4kg(옥수수) lb=1파운드 cwt=100파운드

유통지원용자 및 용자부족불제 단가

품목	단위	2007(\$)	2008(\$)	2009(\$)	2010-2012(\$)
밀	bu	2.75	2.75	2.75	2.94
옥수수	bu	1.95	1.95	1.95	1.95
수수	bu	1.95	1.95	1.95	1.95
보리	bu	1.85	1.85	1.85	1.95
귀리	bu	1.33	1.33	1.33	1.39
면화(Upland)	lb	0.52	0.52	0.52	0.52
면화(ELS)	cwt	0.7977	0.7977	0.7977	0.7977
쌀(long grain)	cwt	6.50	6.50	6.50	6.50
쌀(Medium grain)	bu	6.50	6.50	6.50	6.50
대두	cwt	5.00	5.00	5.00	5.00
기타유지류	ton	9.30	9.30	9.30	10.09
땅콩	lb	355	355	355	355
건조콩	lb	6.22	6.22	5.40	5.40
편두콩(Lentils)	lb	11.72	11.72	11.28	11.28
작은 병아리콩	lb	7.43	7.43	7.43	7.43
큰 병아리콩	lb	n/a	n/a	11.28	11.28
울	lb	1.00	1.00	1.00	1.15
울(non-graded)	lb	0.40	0.40	0.40	0.40
앙골라	lb	4.20	4.20	4.20	4.20
꿀	lb	0.60	0.60	0.60	0.69

붙임 3

가격지지 용자, 직접지불제 목표가격

품목	용자 단가			고정직불 단가	목표가격		
	2008	2009	'10~'12	'08~'12	2008	2009	'10~'12
밀(bu)	\$2.75	\$2.75	\$2.94	\$0.52	\$3.92	\$3.92	\$4.17
옥수수(bu)	\$1.95	\$1.95	\$1.95	\$0.28	\$2.63	\$2.63	\$2.63
수수(bu)	\$1.95	\$1.95	\$1.95	\$0.35	\$2.57	\$2.57	\$2.63
보리(bu)	\$1.85	\$1.85	\$1.95	\$0.24	\$2.24	\$2.24	\$2.63
귀리(bu)	\$1.33	\$1.33	\$1.39	\$0.024	\$1.44	\$1.44	\$1.79
면화(lb)	\$0.52	\$0.52	\$0.52	\$0.0667	\$0.7125	\$0.7125	\$0.7125
긴쌀(cwt)	\$6.50	\$6.50	\$6.50	\$2.35	\$10.50	\$10.50	\$10.50
짧은쌀(cwt)	\$6.50	\$6.50	\$6.50	\$2.35	\$10.50	\$10.50	\$10.50
대두(bu)	\$5.00	\$5.00	\$5.00	\$0.44	\$5.80	\$5.80	\$6.00
기타유지류(cwt)	\$9.30	\$9.30	\$10.09	\$0.80	\$10.10	\$10.10	\$12.68
건조콩(cwt)	\$6.22	\$5.40	\$5.40	n/a	n/a	\$8.32	\$8.32
편두(cwt)	\$11.72	\$11.28	\$11.28	n/a	n/a	\$12.81	\$12.81
작은병아리콩(cwt)	\$7.43	\$7.43	\$7.43	n/a	n/a	\$10.36	\$10.36
큰병아리콩(cwt)	n/a	\$11.28	\$11.28	n/a	n/a	\$12.81	\$12.81

※ 1bu(부셀)=27.2kg, 1lb=1파운드 cwt=100파운드

농업법 정책대상 품목

분류	품목	
기본품목	식량작물	밀, 쌀
	사료작물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유지류	대두
	기 타	해바라기씨, 유채, 카놀라, 잇꽃(safflower),아마인(flaxseed)
	유지류	겨자씨(mustard seed), 크램비(crambe), 참깨
기타	밭면화(upland cotton)	
용자품목	양모, 앙골라염소털(mohair), 꿀, 병아리콩(small chickpeas) 렌즈콩(lentils), 건완두(dry peas)	
특별품목	땅콩, 낙농, 설탕	

※ 기본품목은 자동적으로 용자품목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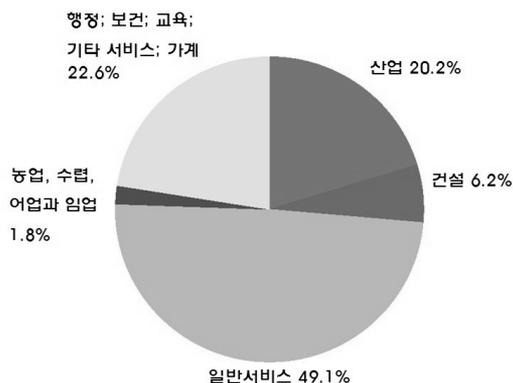
세계농업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5월호

■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최근 상이한 농업구조와 교역조건을 지닌 회원국들이 유럽 연합(EU)에 새로이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및 수출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이 철폐되면서 농업부문의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EU국가들이 국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려고 EU-27의 농업부분 관련 통계들을 그래프에 담았다. 자료출처는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http://ec.europa.eu/eurostat>)이다.

그림 1 EU-27의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2006)



2006년에 EU-27이 생산한 총부가가치는 103,240억 유로였다. 그 중 산업, 건설, 일반서비스업을 포함한 기업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은 전체의 75.5%에 이른다. 반면, 농업, 수렵, 어업 및 임업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총부가가치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의 농업부문 부가가치 비중이 기존 회원국들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회원국들의 농업 생산 비중이 높은 반면 전체 부가가치 규모가 작아 EU-27 차원의 비중에 미친 영향이 작은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산업, 건설, 일반서비스를 포함한 기업부문의 부가가치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내외로 EU 국가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룩셈부르크는 EU 회원국 중 기업부문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약 85%), 전체 경제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27개 회원국가들 중 가장 낮다(0.4%)

2007년 유럽연합에 새로 가입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농업부문 부가가치 비중이 약 10%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러나 이 두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행정, 보건 및 교육관련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다른 EU 회원국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실질가격 기준 농업부문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회원국 간에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농업부문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슬로바키아 10.9%, 헝가리 6.7%, 루마니아 4.1% 순이다. 반면 룩셈부르크 농업 부문의 성장률은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6.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컸던 과거와 달리, 룩셈부르크의 철강 산업과 금융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업에 집중되었던 노동력과 자본이 유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2 EU국가별 ·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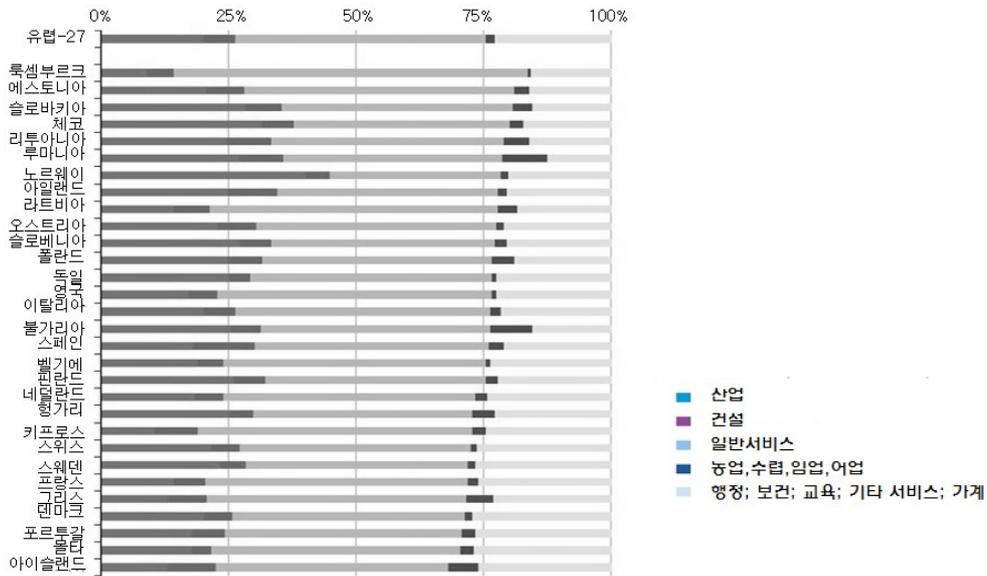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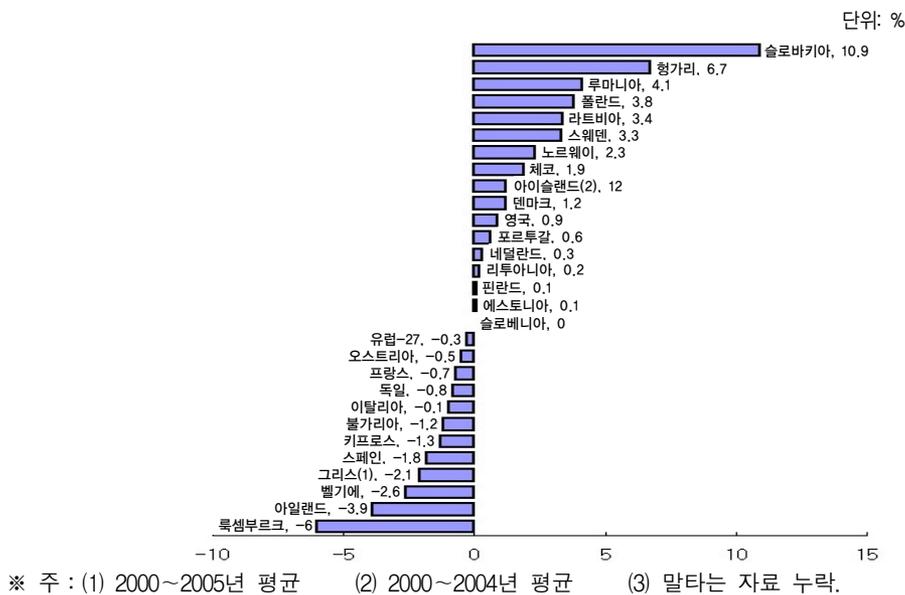


그림 3 농업부문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2000-2006, 실질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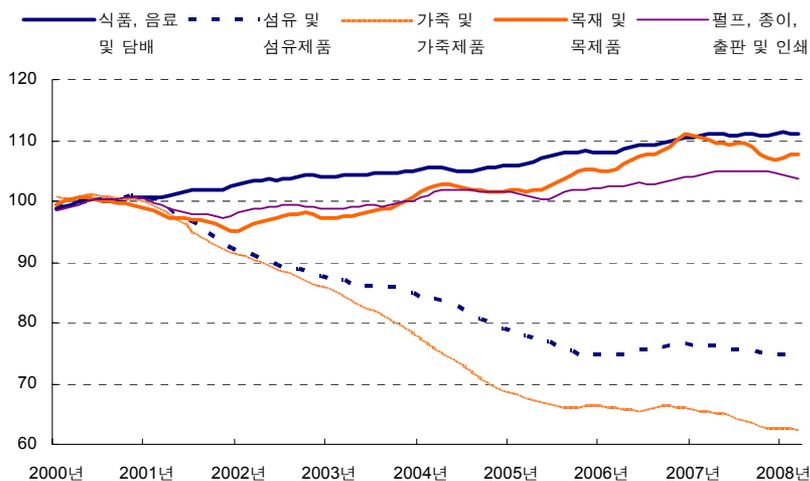


EU-27의 제조업 부문 중 식품, 목재, 펄프 및 종이산업은 생산량이 2000년을 기준으로 2008년 3월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식품산업의 생산량은 2000년 1월 대비 2008년 3월까지 11.1% 증가하였으며, 매출액은 12.2% 증가하였다.

EU-27 식품산업 매출액의 증가는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의 식품음료 수출이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식품산업의 매출액 증가분이 생산량 증가분 보다 높은 것은 식품, 음료 및 담배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한편, EU-27의 섬유 및 가죽 산업의 생산량은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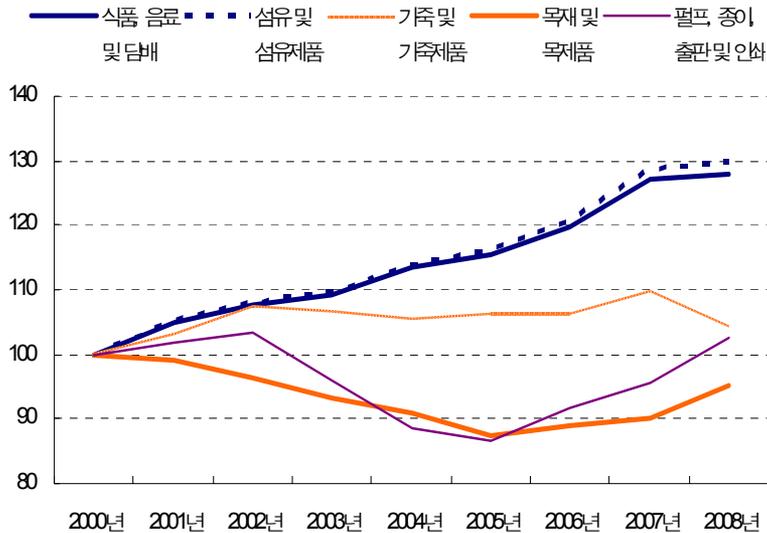
EU 회원 국가들의 섬유 및 가죽제품 생산 공장이 중국을 비롯한 저임금의 아시아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상이 회원국 내 섬유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다. 또한 섬유 쿼터제도 폐지 이후 베트남, 중국 등으로부터의 섬유 수입 증가도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다.

그림 4 EU-27의 산업과 건설 부문 생산지표 변화(2000 = 100)



※ 주 : 2008년은 1~3월 평균임.

그림 5 EU-27의 산업과 건설 부문 연평균 매출액 변화(2000 = 100)



※ 주 : 2008년은 1~3월 평균임

※ 자료 작성 : 유찬희, 이성윤

세계 밀 통계

표 1 한국의 국가별 밀 수입액 및 수입량

년도	국가	국가별금액			국가별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점유율	물량: kg	전년대비 성장률	점유율
1998	미 국	241,744,964	0	36.4	1,441,372,349	0	30.7
	호 주	135,115,163	0	20.4	845,358,852	0	18.0
	우 크 라 이 나	126,912,288	0	19.1	1,164,532,264	0	24.8
	루 마 니 아	30,841,332	0	4.6	237,882,363	0	5.1
	러 시 아 연 합	26,527,660	0	4.0	215,999,282	0	4.6
	캐 나 다	25,763,470	0	3.9	145,265,329	0	3.1
	네 덜 란 드	22,972,927	0	3.5	221,669,314	0	4.7

년도	국가	국가별금액			국가별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점유율	물량: kg	전년대비 성장률	점유율
	불 가 리 아	21,067,729	0	3.2	187,090,394	0	4.0
	프 랑 스	7,646,280	0	1.2	54,856,503	0	1.2
	아 르 헨 티 나	7,434,922	0	1.1	52,278,607	0	1.1
	헝 가 리	5,963,382	0	0.9	42,514,587	0	0.9
	중 국	2,471,895	0	0.4	17,673,812	0	0.4
	슬 로 베 니 아	2,470,411	0	0.4	17,407,000	0	0.4
	오 스 트 리 아	2,222,619	0	0.3	14,620,900	0	0.3
	스 위 스	1,202,439	0	0.2	10,810,198	0	0.2
	유 고 연 방	973,607	0	0.1	6,860,000	0	0.1
	이 탈 리 아	964,735	0	0.1	6,849,404	0	0.1
	아랍에미리트	816,904	0	0.1	8,715,500	0	0.2
	베 네 주 엘 라	280,836	0	0.0	2,150,440	0	0.0
	파 나 마	170,297	0	0.0	1,200,000	0	0.0
	우 간 다	98,335	0	0.0	1,050,000	0	0.0
	기 타 국 가	37	0	0.0	0	0	0.0
	합 계	663,662,232		100.0	4,696,157,098		100.0
2000	미 국	213,476,800	105	45.3	1,427,232,716	106	42.9
	호 주	177,688,005	117	37.7	1,250,692,508	115	37.6
	캐 나 다	39,926,332	218	8.5	281,763,597	267	8.5
	영 국	23,807,460	377	5.1	221,087,931	377	6.6
	우 크 라 이 나	11,629,151	12	2.5	109,857,755	11	3.3
	네 덜 란 드	3,230,237	32	0.7	29,577,905	29	0.9
	그 리 스	998,909	0	0.2	9,601,000	0	0.3
	프 랑 스	23,026	0	0.0	87,600	0	0.0
	중 국	18,904	5	0.0	58,598	2	0.0
	이 탈 리 아	7,511	59	0.0	8,640	13	0.0
	일 본	1,447	0	0.0	1,011	0	0.0
	홍 콩	1,182	0	0.0	200	0	0.0
	스 위 스	104	0	0.0	25	0	0.0
		합 계	470,809,068		100.0	3,329,969,486	
2002	미 국	209,744,405	93	38.6	1,252,946,758	88	32.4
	호 주	167,676,686	106	30.9	1,045,898,781	107	27.1
	우 크 라 이 나	59,807,840	224	11.0	616,603,210	242	16.0

년도	국가	국가별금액			국가별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 성장율	점유율	물량: kg	전년대비 성장율	점유율
	중 국	58,491,574	156	10.8	570,481,385	168	14.8
	인 도	26,894,765	78	4.9	256,752,754	87	6.6
	캐 나 다	20,226,710	43	3.7	115,760,305	34	3.0
	싱 가 포 르	433,745	867	0.1	4,398,130	1,078	0.1
	프 랑 스	92,778	462	0.0	229,380	345	0.0
	네 델 란 드	30,769	111	0.0	49,014	163	0.0
	독 일	13,577	0	0.0	66,440	0	0.0
	이 탈 리 아	7,789	167	0.0	15,780	158	0.0
	홍 콩	1,978	28	0.0	305	53	0.0
	일 본	987	726	0.0	620	1,240	0.0
	가 나	215	0	0.0	55	0	0.0
	합 계	543,423,818		100.0	3,863,202,917		100.0
2004	미 국	274,352,703	105	41.2	1,334,325,718	98	39.5
	호 주	249,230,861	147	37.5	1,255,972,164	142	37.1
	중 국	57,756,326	61	8.7	334,606,882	42	9.9
	캐 나 다	38,861,129	127	5.8	191,467,099	131	5.7
	인 도	28,654,827	173	4.3	157,731,613	94	4.7
	우 크 라 이 나	15,835,600	67	2.4	106,428,683	43	3.1
	터 키	165,622	329	0.0	600,000	300	0.0
	프 랑 스	119,393	86	0.0	222,750	73	0.0
	키르기스스탄	84,693	154	0.0	344,000	127	0.0
	이 탈 리 아	34,430	158	0.0	41,770	108	0.0
	네 델 란 드	32,782	89	0.0	66,500	74	0.0
	싱 가 포 르	24,980	6	0.0	35,001	1	0.0
	일 본	17,788	664	0.0	10,403	1,107	0.0
	독 일	6,594	12	0.0	4,620	2	0.0
	러 시 아 연 합	5,171	0	0.0	13,275	0	0.0
	파 키 스 탄	1,203	115	0.0	4,040	135	0.0
	홍 콩	890	45	0.0	60	20	0.0
	합 계	665,184,992		100.0	3,381,874,578		100.0
2005	미 국	262,404,145	96	38.9	1,261,843,792	95	34.4
	캐 나 다	197,239,714	508	29.2	1,280,041,948	669	34.9
	호 주	196,723,823	79	29.1	998,251,802	80	27.2

년도	국가	국가별금액			국가별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점유율	물량: kg	전년대비 성장률	점유율
	우 크 라 이 나	13,564,505	86	2.0	106,936,196	101	2.9
	중 국	3,070,500	5	0.5	13,092,981	4	0.4
	인 도 네 시 아	1,030,660	0	0.2	7,586,420	0	0.2
	터 키	718,978	434	0.1	2,590,000	432	0.1
	키르기스스탄	266,600	315	0.0	628,000	183	0.0
	프 랑 스	142,034	119	0.0	271,487	122	0.0
	이 탈 리 아	79,685	231	0.0	99,139	237	0.0
	스 리 랑 카	30,418	0	0.0	220,000	0	0.0
	러 시 아 연 합	20,333	393	0.0	55,480	418	0.0
	독 일	18,088	274	0.0	17,980	389	0.0
	인 도	10,850	0	0.0	53,209	0	0.0
	네 델 랑 드	5,333	16	0.0	6,000	9	0.0
	베 트 남	5,290	0	0.0	10,500	0	0.0
	일 본	4,230	24	0.0	1,632	16	0.0
	싱 가 포 르	551	2	0.0	26	0	0.0
	파 키 스 탄	120	10	0.0	1,000	25	0.0
	요 르 단	16	0	0.0	10	0	0.0
	합 계	675,335,873		100.0	3,671,707,602		100.0
2006	미 국	231,256,698	88	34.6	1,111,418,987	88	31.2
	호 주	224,681,178	114	33.6	1,042,595,395	104	29.3
	캐 나 다	100,005,830	51	15.0	626,301,537	49	17.6
	중 국	52,866,234	1,722	7.9	332,455,427	2,539	9.3
	우 크 라 이 나	47,494,055	350	7.1	356,963,994	334	10.0
	브 라 질	7,085,139	0	1.1	54,843,520	0	1.5
	불 가 리 아	3,474,982	79	0.5	27,625,713	53	0.8
	터 키	976,080	136	0.1	3,409,000	132	0.1
	키르기스스탄	408,360	153	0.1	1,195,000	190	0.0

년도	국가	국가별금액			국가별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점유율	물량: kg	전년대비 성장률	점유율
	인도네시아	166,408	16	0.0	594,400	8	0.0
	프랑스	150,404	106	0.0	256,300	94	0.0
	싱가포르	140,636	25,524	0.0	1,042,740	4,010,539	0.0
	이탈리아	56,384	71	0.0	66,618	67	0.0
	일본	45,042	1,065	0.0	38,425	2,355	0.0
	러시아연합	11,496	57	0.0	39,160	71	0.0
	독일	9,612	53	0.0	7,872	44	0.0
	베트남	8,237	156	0.0	21,250	202	0.0
	리투아니아	5,600	0	0.0	21,250	0	0.0
	네덜란드	1,802	34	0.0	2,000	33	0.0
	인도	963	9	0.0	2,062	4	0.0
	파키스탄	150	125	0.0	1,000	100	0.0
	필리핀	93	0	0.0	200	0	0.0
	쿠웨이트	41	0	0.0	24	0	0.0
	몽고	30	0	0.0	1	0	0.0
	합계	668,845,454		100.0	3,558,901,875		100.0
2007	미국	349,091,797	151	40.8	1,215,185,642	109	37.4
	호주	235,845,764	105	27.5	824,739,492	79	25.4
	중국	225,942,124	427	26.4	1,073,740,181	323	33.0
	캐나다	41,180,828	41	4.8	127,141,930	20	3.9
	인도네시아	1,151,476	692	0.1	2,517,000	424	0.1
	터키	1,071,988	110	0.1	3,389,000	99	0.1
	싱가포르	955,443	679	0.1	2,328,100	223	0.1
	키르기스스탄	487,520	119	0.1	1,220,000	102	0.0
	일본	222,752	495	0.0	199,834	520	0.0
	프랑스	183,467	122	0.0	279,725	109	0.0
	이탈리아	77,603	138	0.0	82,390	124	0.0
	러시아연합	30,026	261	0.0	88,000	225	0.0

년도	국가	국가별금액			국가별물량		
		금액: US달러	전년대비 성장률	점유율	물량: kg	전년대비 성장률	점유율
2008	베 트 남	16,159	196	0.0	40,000	188	0.0
	독 일	12,557	131	0.0	10,368	132	0.0
	아랍에미리트	8,110	1	0.0	21,500	0	0.0
	태 국	6,192	7,460	0.0	21,500	13,961	0.0
	아 일 랜 드	3,558	0	0.0	1,000	0	0.0
	핀 란 드	1,060	0	0.0	996	0	0.0
	파 키 스 탄	1,041	694	0.0	5,000	500	0.0
	인 도	461	48	0.0	1,625	79	0.0
	합 계	856,289,926		100.0	3,251,013,283		100.0
	미 국	313,082,421	90	68.2	671,222,676	55	69.2
	호 주	106,624,833	45	23.2	219,371,464	27	22.6
	캐 나 다	31,891,280	77	6.9	59,072,015	47	6.1
	중 국	3,881,847	2	0.8	14,848,578	1	1.5
	인 도 네 시 아	1,480,383	129	0.3	2,320,000	92	0.2
	싱 가 포 르	786,655	82	0.2	1,451,500	62	0.1
	터 키	542,971	51	0.1	947,500	28	0.1
	키르기스스탄	450,590	92	0.1	820,000	67	0.1
	일 본	145,051	65	0.0	108,710	54	0.0
	스 리 랑 카	104,167	343	0.0	150,500	68	0.0
	프 랑 스	73,173	40	0.0	74,550	27	0.0
이 탈 리 아	26,650	34	0.0	25,500	31	0.0	
베 트 남	14,365	89	0.0	20,000	50	0.0	
카자흐스탄	13,125	0	0.0	25,000	0	0.0	
아 일 랜 드	2,599	73	0.0	1,000	100	0.0	
헝 가 리	806	0	0.0	1,600	0	0.0	
인 도	130	28	0.0	500	31	0.0	
합 계	459,121,046		100.0	970,461,093		100.0	

표 2 주요국 밀 가격

마케팅연도1/ Marketing Year	미국 All wheat	네덜란드, 로테르담 No. 1 dark northern spring, 14% protein	아르헨티나 No. 2 wheat	캐나다 No. 1 Canadian western red spring	호주 Australian soft white
1930 / 31	24	-	-	-	-
1940 / 41	25	-	-	-	-
1950 / 51	73	-	-	-	-
1960 / 61	64	-	-	-	-
1970 / 71	49	-	-	-	-
1980 / 81	144	-	-	-	-
1986 / 87	89	-	203	192	176
1987 / 88	94	150	119	158	140
1988 / 89	137	191	150	204	170
1989 / 90	137	182	150	191	170
1990 / 91	96	144	104	137	128
1991 / 92	110	-	113	162	157
1992 / 93	119	185	128	174	158
1993 / 94	120	211	128	208	152
1994 / 95	127	196	135	186	171
1995 / 96	167	247	229	232	226
1996 / 97	158	224	182	204	212
1997 / 98	124	191	141	173	169
1998 / 99	97	180	116	158	148
1999 / 00	91	163	113	150	138
2000 / 01	96	165	124	151	154
2001 / 02	102	161	121	149	157
2002 / 03	131	189	158	194	185
2003 / 04	125	204	161	188	182
2004 / 05	125	213	127	202	177
2005 / 06	126	224	140	204	191
2006 / 07	157	257	192	230	230
2007 / 08	241	321	250	373	235
2008 / 09	243-298	-	-	-	-

주 : 마케팅연도는 6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임.

출처: USDA (<http://www.ers.usda.gov/Data/Wheat/WheatYearbook.aspx>)

표 3 세계 각국 밀 수급 통계(2007/2008)

국가명	수확면적 Area Harvested			단수 Yield	
	1000HA	비율 %	순위	MT/HA	순위
가나	0	0.00	68	0	69
가봉	0	0.00	68	0	69
가이아나	0	0.00	68	0	69
과테말라	1	0.00	68	1	27
그루지야	48	0.02	59	1.58	27
기니	0	0.00	68	0	69
나이지리아	95	0.04	52	1.05	27
남아프리카공화국	632	0.29	27	2.92	9
네팔	669	0.31	25	2.09	27
노르웨이	83	0.04	52	4.52	9
뉴질랜드	36	0.02	59	7.69	1
니제르	0	0.00	68	0	69
니카라과	0	0.00	68	0	69
도미니크	0	0.00	68	0	69
라이베리아	0	0.00	68	0	69
러시아	24,500	11.26	3	2.02	27
레바논	50	0.02	59	2.8	9
레소토	10	0.00	68	0.5	69
리비아	250	0.11	38	0.5	69
마다가스카	0	0.00	68	0	69
마케도니아	120	0.06	44	2.33	27
말레이시아	0	0.00	68	0	69
멕시코	677	0.31	25	5.22	2
모로코	2,572	1.18	14	0.62	69
모리셔스	0	0.00	68	0	69
모리타니아	0	0.00	68	0	69
모잠비크	3	0.00	68	1	27
몰도바	285	0.13	37	1.58	27
몽골	240	0.11	38	0.6	69
미국	20,644	9.49	5	2.72	27
바레인	0	0.00	68	0	69
바베이도스	0	0.00	68	0	69
방글라데시	440	0.20	32	2.27	27
버마	95	0.04	52	1.55	27
베네수엘라	0	0.00	68	0	69
베트남	0	0.00	68	0	69
벨로루시	500	0.23	29	3	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55	0.03	56	2.73	27
볼리비아	114	0.05	47	1.03	27
부르키나	0	0.00	68	0	69

※ 자료 : FAS/USDA.

사료용 소비량 Feed Consumption			식용 종자 산업용 소비량 FSI Consumption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0	0.00	57	300	0.06	80	Ghana
0	0.00	57	80	0.02	102	Gabon
0	0.00	57	50	0.01	110	Guyana
40	0.04	46	441	0.08	71	Guatemala
50	0.05	35	950	0.18	50	Georgia, Republic of
0	0.00	57	150	0.03	95	Guinea
50	0.05	35	3,050	0.59	25	Nigeria
10	0.01	55	2,850	0.55	27	South Africa, Republic of
0	0.00	57	1,415	0.27	40	Nepal
80	0.08	31	525	0.10	64	Norway
40	0.04	46	610	0.12	59	New Zealand
0	0.00	57	30	0.01	110	Niger
0	0.00	57	115	0.02	102	Nicaragua
0	0.00	57	400	0.08	71	Dominican Republic
0	0.00	57	35	0.01	110	Liberia
15,400	15.71	2	22,800	4.38	5	Russian Federation
0	0.00	57	440	0.08	71	Lebanon
0	0.00	57	80	0.02	102	Lesotho
0	0.00	57	1,425	0.27	40	Libya
0	0.00	57	150	0.03	95	Madagascar
80	0.08	31	275	0.05	83	Macedonia, Republic of
50	0.05	35	1,150	0.22	45	Malaysia
100	0.10	30	6,350	1.22	14	Mexico
50	0.05	35	7,100	1.37	13	Morocco
0	0.00	57	100	0.02	102	Mauritius
0	0.00	57	250	0.05	83	Mauritania
0	0.00	57	403	0.08	71	Mozambique
25	0.03	49	700	0.13	56	Moldova, Republic of
0	0.00	57	395	0.08	71	Mongolia
1,633	1.67	8	28,259	5.43	4	United States
0	0.00	57	20	0.00	118	Bahrain
0	0.00	57	20	0.00	118	Barbados
0	0.00	57	2,900	0.56	26	Bangladesh
0	0.00	57	272	0.05	83	Burma, Union of
0	0.00	57	1,590	0.31	37	Venezuela
200	0.20	22	1,100	0.21	46	Vietnam
600	0.61	11	1,040	0.20	47	Belarus
80	0.08	31	525	0.10	64	Bosnia and Herzegovina
15	0.02	53	600	0.12	59	Bolivia
0	0.00	57	75	0.01	110	Burkina

세계농업 흐름 분석

국가명	수확면적 Area Harvested			단수 Yield	
	1000HA	비율 %	순위	MT/HA	순위
부탄	13	0.01	64	1.54	27
북한	110	0.05	47	2.4	27
브라질	1,819	0.84	18	2.1	27
사우디아라비아	490	0.23	29	5.1	2
세네갈	0	0.00	68	0	69
세르비아	556	0.26	28	3.59	9
소말리아	0	0.00	68	0	69
수단	170	0.08	42	3.53	9
스리랑카	0	0.00	68	0	69
스위스	100	0.05	47	5.5	2
시리아	1,700	0.78	19	2.35	27
시에라리온	0	0.00	68	0	69
싱가폴	0	0.00	68	0	69
아랍에미리트연합국	0	0.00	68	0	69
아르메니아	105	0.05	47	2.86	9
아르헨티나	5,600	2.57	13	2.77	9
아이티	0	0.00	68	0	69
아제르바이잔	500	0.23	29	2.85	9
아프가니스탄	2,200	1.01	15	1.73	27
알바니아	110	0.05	47	3	9
알제리	1,700	0.78	19	1.53	27
앙골라	5	0.00	68	0.8	69
에리트레아	25	0.01	64	0.4	69
에콰도르	5	0.00	68	0.6	69
에티오피아	2,060	0.95	16	2.38	27
엘살바도르	0	0.00	68	0	69
에멘	90	0.04	52	1.39	27
오만	0	0.00	68	0	69
오스트레일리아	12,300	5.66	7	1.07	27
온두라스	0	0.00	68	0	69
요르단	30	0.01	64	1.33	27
우루과이	200	0.09	41	2.9	9
우즈베키스탄	1,300	0.60	21	4.77	2
우크라이나	5,950	2.74	12	2.34	27
유럽연합 - 27	24,716	11.36	2	4.83	2
이라크	1,883	0.87	17	1.24	27
이란	6,900	3.17	11	2.17	27
이스라엘	67	0.03	56	2.24	27
이집트	1,287	0.59	22	6.43	2
인도	28,200	12.97	1	2.69	27

사료용 소비량 Feed Consumption			식용 종자 산업용 소비량 FSI Consumption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0	0.00	57	30	0.01	110	Bhutan
0	0.00	57	664	0.13	56	Korea, Democratic Peoples Rep
200	0.20	22	10,300	1.98	10	Brazil
50	0.05	35	2,600	0.50	30	Saudi Arabia
0	0.00	57	275	0.05	83	Senegal
150	0.15	28	1,600	0.31	37	Serbia
0	0.00	57	30	0.01	110	Somalia
0	0.00	57	1,800	0.35	36	Sudan
0	0.00	57	800	0.15	55	Sri Lanka
250	0.26	21	600	0.12	59	Switzerland
400	0.41	14	4,100	0.79	24	Syria
0	0.00	57	50	0.01	110	Sierra Leone
0	0.00	57	225	0.04	91	Singapore
0	0.00	57	350	0.07	77	United Arab Emirates
30	0.03	49	500	0.10	64	Armenia, Republic of
80	0.08	31	5,350	1.03	19	Argentina
0	0.00	57	200	0.04	91	Haiti
200	0.20	22	2,400	0.46	31	Azerbaijan, Republic of
0	0.00	57	4,400	0.85	23	Afghanistan
0	0.00	57	630	0.12	59	Albania
50	0.05	35	7,700	1.48	12	Algeria
0	0.00	57	454	0.09	68	Angola
0	0.00	57	85	0.02	102	Eritrea
40	0.04	46	413	0.08	71	Ecuador
0	0.00	57	5,779	1.11	15	Ethiopia
0	0.00	57	190	0.04	91	El Salvador
0	0.00	57	2,025	0.39	35	Yemen
0	0.00	57	250	0.05	83	Oman
3,500	3.57	4	2,700	0.52	29	Australia
50	0.05	35	175	0.03	95	Honduras
0	0.00	57	900	0.17	52	Jordan
0	0.00	57	475	0.09	68	Uruguay
1,200	1.22	9	5,600	1.08	17	Uzbekistan, Republic of
3,100	3.16	5	9,650	1.86	11	Ukraine
53,665	54.74	1	65,300	12.55	3	EU-27
300	0.31	19	5,309	1.02	20	Iraq
300	0.31	19	15,200	2.92	9	Iran
350	0.36	17	925	0.18	50	Israel
50	0.05	35	15,800	3.04	8	Egypt
200	0.20	22	75,650	14.54	2	India

국가명	수확면적 Area Harvested			단수 Yield	
	1000HA	비율 %	순위	MT/HA	순위
인도네시아	0	0.00	68	0	69
일본	210	0.10	40	4.33	9
자메이카	0	0.00	68	0	69
잠비아	33	0.02	59	2.88	9
중국	23,100	10.62	4	4.59	9
짐바브웨	45	0.02	59	3	9
차드	4	0.00	68	1.25	27
칠레	295	0.14	34	4.6	2
카메룬	0	0.00	68	0	69
카자흐스탄	12,750	5.86	6	1.3	27
캐나다	8,640	3.97	8	2.32	27
케냐	120	0.06	44	1.88	27
코스타리카	0	0.00	68	0	69
코트디부아르	0	0.00	68	0	69
콜롬비아	15	0.01	64	2	27
콩고	10	0.00	68	1.2	27
콩고 (브라자빌)	0	0.00	68	0	69
쿠바	0	0.00	68	0	69
쿠웨이트	0	0.00	68	0	69
크로아티아	160	0.07	43	4.38	9
키르기스스탄	355	0.16	33	2	27
타이완	0	0.00	68	0	69
타지키스탄	315	0.14	34	1.68	27
탄자니아	65	0.03	56	1.08	27
태국	0	0.00	68	0	69
터키	8,600	3.95	9	1.8	27
토고	0	0.00	68	0	69
투르크메니스탄	850	0.39	23	1.88	27
튀니지	780	0.36	24	1.58	27
트리니다드토바고	0	0.00	68	0	69
파나마	0	0.00	68	0	69
파라과이	300	0.14	34	2.1	27
파키스탄	8,400	3.86	10	2.77	9
파푸아뉴기니	0	0.00	68	0	69
페루	130	0.06	44	1.35	27
피지	0	0.00	68	0	69
필리핀	0	0.00	68	0	69
한국	2	0.00	68	4	9
홍콩	0	0.00	68	0	69
합계	217,489	100		184	

사료용 소비량 Feed Consumption			식용 종자 산업용 소비량 FSI Consumption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1000MT	비율 %	순위	
50	0.05	35	5,300	1.02	20	Indonesia
200	0.20	22	5,700	1.10	16	Japan
0	0.00	57	350	0.07	77	Jamaica and Dep
0	0.00	57	160	0.03	95	Zambia
6,000	6.12	3	96,500	18.55	1	China, Peoples Republic of
0	0.00	57	260	0.05	83	Zimbabwe
0	0.00	57	55	0.01	110	Chad
200	0.20	22	2,200	0.42	33	Chile
0	0.00	57	250	0.05	83	Cameroon
2,700	2.75	7	4,800	0.92	22	Kazakhstan, Republic of
3,000	3.06	6	5,500	1.06	18	Canada
0	0.00	57	900	0.17	52	Kenya
0	0.00	57	190	0.04	91	Costa Rica
0	0.00	57	250	0.05	83	Cote d'Ivoire
20	0.02	53	1,250	0.24	43	Colombia
0	0.00	57	337	0.06	80	Congo, Democratic Rep of the
0	0.00	57	150	0.03	95	Congo (Brazzaville)
0	0.00	57	700	0.13	56	Cuba
0	0.00	57	300	0.06	80	Kuwait
25	0.03	49	600	0.12	59	Croatia
125	0.13	29	970	0.19	49	Kyrgyzstan, Republic of
10	0.01	55	1,050	0.20	47	Taiwan
45	0.05	35	1,185	0.23	44	Tajikistan, Republic of
0	0.00	57	520	0.10	64	Tanzania, United Republic of
320	0.33	18	830	0.16	54	Thailand
600	0.61	11	15,900	3.06	7	Turkey
0	0.00	57	100	0.02	102	Togo
500	0.51	13	1,300	0.25	42	Turkmenistan
0	0.00	57	2,750	0.53	28	Tunisia
0	0.00	57	125	0.02	102	Trinidad and Tobago
0	0.00	57	150	0.03	95	Panama
25	0.03	49	350	0.07	77	Paraguay
400	0.41	14	22,000	4.23	6	Pakistan
0	0.00	57	150	0.03	95	Papua New Guinea
50	0.05	35	1,450	0.28	39	Peru
0	0.00	57	120	0.02	102	Fiji
400	0.41	14	2,150	0.41	34	Philippines
700	0.71	10	2,300	0.44	32	Korea, Republic of
0	0.00	57	485	0.09	68	Hong Kong
98,038	100		520,141	100		World Total

국가명	생산량 Production			수출량 MY Exports		
	1000HA	비율 %	순위	1000HA	비율 %	순위
가 나	0	0.00	65	0	0.00	52
가 봉	0	0.00	65	0	0.00	52
가 이 아 나	0	0.00	65	0	0.00	52
과 테 말 라	1	0.00	65	20	0.02	38
그 루 지 야	76	0.01	62	0	0.00	52
기 니	0	0.00	65	0	0.00	52
나 이 지 리 아	100	0.02	51	0	0.00	52
남 아프리카 공화국	1,844	0.30	25	300	0.27	19
네 팔	1,395	0.23	29	0	0.00	52
노 르 웨 이	375	0.06	43	0	0.00	52
뉴 질 랜 드	277	0.05	44	20	0.02	38
니 제 르	0	0.00	65	0	0.00	52
니 카 라 과	0	0.00	65	35	0.03	35
도 미 니 크	0	0.00	65	0	0.00	52
라 이 베 리 아	0	0.00	65	0	0.00	52
러 시 아	49,400	8.15	5	12,000	10.95	3
레 바 논	140	0.02	51	0	0.00	52
레 소 토	5	0.00	65	0	0.00	52
리 비 아	125	0.02	51	0	0.00	52
마 다 가 스 카	0	0.00	65	0	0.00	52
마 케 도 니 아	280	0.05	44	0	0.00	52
말 레 이 시 아	0	0.00	65	200	0.18	21
멕 시 코	3,534	0.58	20	550	0.50	14
모 로 코	1,583	0.26	26	50	0.05	32
모 리 셔 스	0	0.00	65	25	0.02	38
모 리 타 니 아	0	0.00	65	0	0.00	52
모 잠 비 크	3	0.00	65	0	0.00	52
몰 도 바	450	0.07	42	10	0.01	44
몽 골	145	0.02	51	0	0.00	52
미 국	56,247	9.28	4	34,836	31.80	1
바 레 인	0	0.00	65	0	0.00	52
바 베 이 도 스	0	0.00	65	0	0.00	52
방 글 라 데 시	1,000	0.16	33	0	0.00	52
버 마	147	0.02	51	0	0.00	52
베 네 수 엘 라	0	0.00	65	10	0.01	44
베 트 남	0	0.00	65	0	0.00	52
벨 로 루 시	1,500	0.25	28	10	0.01	44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50	0.02	51	0	0.00	52
볼 리 비 아	117	0.02	51	0	0.00	52
부 르 키 나	0	0.00	65	0	0.00	52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	순위	
0	0.00	68	0.00	68	Ghana
0	0.00	68	0.00	68	Gabon
0	0.00	68	0.00	68	Guyana
100	0.09	48	20.79	23	Guatemala
202	0.18	41	20.20	25	Georgia, Republic of
0	0.00	68	0.00	68	Guinea
100	0.09	48	3.23	67	Nigeria
484	0.44	27	16.92	32	South Africa, Republic of
0	0.00	68	0.00	68	Nepal
371	0.34	30	61.32	4	Norway
184	0.17	43	28.31	13	New Zealand
0	0.00	68	0.00	68	Niger
0	0.00	68	0.00	68	Nicaragua
20	0.02	64	5.00	62	Dominican Republic
0	0.00	68	0.00	68	Liberia
2,580	2.34	12	6.75	58	Russian Federation
0	0.00	68	0.00	68	Lebanon
0	0.00	68	0.00	68	Lesotho
0	0.00	68	0.00	68	Libya
0	0.00	68	0.00	68	Madagascar
50	0.05	57	14.08	35	Macedonia, Republic of
121	0.11	47	10.08	49	Malaysia
548	0.50	26	8.50	53	Mexico
1,120	1.02	18	15.66	34	Morocco
0	0.00	68	0.00	68	Mauritius
0	0.00	68	0.00	68	Mauritania
0	0.00	68	0.00	68	Mozambique
78	0.07	52	10.76	47	Moldova, Republic of
0	0.00	68	0.00	68	Mongolia
6,518	5.92	3	21.81	22	United States
0	0.00	68	0.00	68	Bahrain
0	0.00	68	0.00	68	Barbados
277	0.25	36	9.55	52	Bangladesh
0	0.00	68	0.00	68	Burma, Union of
75	0.07	52	4.72	63	Venezuela
0	0.00	68	0.00	68	Vietnam
319	0.29	32	19.45	27	Belarus
32	0.03	61	5.29	60	Bosnia and Herzegovina
598	0.54	24	97.24	1	Bolivia
0	0.00	68	0.00	68	Burkina

국가명	생산량 Production			수출량 MY Exports		
	1000HA	비율 %	순위	1000HA	비율 %	순위
부탄	20	0.00	65	0	0.00	52
북한	264	0.04	48	0	0.00	52
브라질	3,825	0.63	18	750	0.68	12
사우디아라비아	2,500	0.41	22	0	0.00	52
세네갈	0	0.00	65	0	0.00	52
세르비아	1,994	0.33	24	375	0.34	17
소말리아	0	0.00	65	0	0.00	52
수단	600	0.10	37	0	0.00	52
스리랑카	0	0.00	65	200	0.18	21
스위스	550	0.09	40	10	0.01	44
시리아	4,000	0.66	17	800	0.73	11
시에라리온	0	0.00	65	0	0.00	52
싱가폴	0	0.00	65	75	0.07	29
아랍에미리트연합국	0	0.00	65	400	0.37	16
아르메니아	300	0.05	44	0	0.00	52
아르헨티나	15,500	2.56	9	10,000	9.13	4
아이티	0	0.00	65	0	0.00	52
아제르바이잔	1,425	0.23	29	0	0.00	52
아프가니스탄	3,800	0.63	18	0	0.00	52
알바니아	330	0.05	44	0	0.00	52
알제리	2,600	0.43	21	0	0.00	52
앙골라	4	0.00	65	0	0.00	52
에리트레아	10	0.00	65	0	0.00	52
에콰도르	3	0.00	65	0	0.00	52
에티오피아	4,900	0.81	16	0	0.00	52
엘살바도르	0	0.00	65	10	0.01	44
에멘	125	0.02	51	0	0.00	52
오만	0	0.00	65	100	0.09	25
오스트레일리아	13,100	2.16	13	7,500	6.85	7
온두라스	0	0.00	65	0	0.00	52
요르단	40	0.01	62	0	0.00	52
우루과이	580	0.10	37	150	0.14	24
우즈베키스탄	6,200	1.02	15	100	0.09	25
우크라이나	13,900	2.29	12	700	0.64	13
유럽연합 - 27	119,481	19.70	1	9,000	8.21	5
이라크	2,343	0.39	23	0	0.00	52
이란	15,000	2.47	11	50	0.05	32
이스라엘	150	0.02	51	0	0.00	52
이집트	8,275	1.36	14	10	0.01	44
인도	75,810	12.50	3	50	0.05	32

수입량 MY Imports			수입의존도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	순위	
10	0.01	117	33.33	87	Bhutan
400	0.37	49	60.24	68	Korea, Democratic Peoples Rep
7,000	6.52	2	60.33	67	Brazil
50	0.05	105	1.12	112	Saudi Arabia
275	0.26	65	100.00	1	Senegal
100	0.09	95	4.26	105	Serbia
30	0.03	110	100.00	1	Somalia
1,200	1.12	26	66.67	64	Sudan
1,000	0.93	32	90.91	42	Sri Lanka
275	0.26	65	27.61	89	Switzerland
200	0.19	76	2.43	107	Syria
50	0.05	105	100.00	1	Sierra Leone
300	0.28	57	100.00	1	Singapore
750	0.70	36	100.00	1	United Arab Emirates
225	0.21	72	39.82	83	Armenia, Republic of
5	0.00	119	0.03	119	Argentina
200	0.19	76	100.00	1	Haiti
1,000	0.93	32	31.34	88	Azerbaijan, Republic of
600	0.56	41	13.64	95	Afghanistan
300	0.28	57	47.62	76	Albania
4,400	4.10	6	41.96	80	Algeria
450	0.42	45	99.12	35	Angola
75	0.07	98	88.24	49	Eritrea
450	0.42	45	89.46	47	Ecuador
300	0.28	57	5.19	103	Ethiopia
200	0.19	76	88.89	48	El Salvador
1,900	1.77	15	93.83	38	Yemen
350	0.33	53	100.00	1	Oman
75	0.07	98	0.43	116	Australia
225	0.21	72	100.00	1	Honduras
700	0.65	37	57.95	69	Jordan
50	0.05	105	7.34	101	Uruguay
700	0.65	37	8.52	97	Uzbekistan, Republic of
350	0.33	53	2.23	109	Ukraine
6,500	6.06	3	4.65	104	EU-27
3,500	3.26	9	55.04	71	Iraq
200	0.19	76	1.07	114	Iran
1,100	1.03	29	76.82	60	Israel
7,500	6.99	1	37.70	84	Egypt
2,000	1.86	14	2.43	107	India

국가명	소비량 Total Consumption			자급율	
	1000HA	비율 %	순위	%	순위
인도네시아	5,350	0.87	23	0.00	76
일본	5,900	0.95	19	15.42	57
자메이카	350	0.06	75	0.00	76
잠비아	160	0.03	93	59.38	33
중국	102,500	16.58	2	103.41	13
짐바브웨	260	0.04	84	51.92	41
차드	55	0.01	107	9.09	62
칠레	2,400	0.39	34	56.54	35
카메룬	250	0.04	84	0.00	76
카자흐스탄	7,500	1.21	14	221.33	3
캐나다	8,500	1.38	12	235.88	2
케냐	900	0.15	53	25.00	53
코스타리카	190	0.03	93	0.00	76
코트디부아르	250	0.04	84	0.00	76
콜롬비아	1,270	0.21	44	2.36	70
콩고	337	0.05	81	3.56	68
콩고 (브라자빌)	150	0.02	97	0.00	76
쿠바	700	0.11	58	0.00	76
쿠웨이트	300	0.05	81	0.00	76
크로아티아	625	0.10	61	112.00	10
키르기스스탄	1,095	0.18	50	64.84	28
타이완	1,060	0.17	51	0.00	76
타지키스탄	1,230	0.20	47	43.09	43
탄자니아	520	0.08	67	13.46	58
태국	1,150	0.19	48	0.00	76
터키	16,500	2.67	7	93.94	19
토고	100	0.02	97	0.00	76
투르크메니스탄	1,800	0.29	36	88.89	22
튀니지	2,750	0.44	30	44.91	42
트리니다드토바고	125	0.02	97	0.00	76
파나마	150	0.02	97	0.00	76
파라과이	375	0.06	75	168.00	6
파키스탄	22,400	3.62	6	104.02	12
파푸아뉴기니	150	0.02	97	0.00	76
페루	1,500	0.24	41	11.67	61
피지	120	0.02	97	0.00	76
필리핀	2,550	0.41	33	0.00	76
한국	3,000	0.49	27	0.27	74
홍콩	485	0.08	67	0.00	76
합계	618,179	100		98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Country
1000MT	비율 %	순위	%	순위	
1,069	0.97	19	19.98	26	Indonesia
1,327	1.21	16	22.49	20	Japan
0	0.00	68	0.00	68	Jamaica and Dep
0	0.00	68	0.00	68	Zambia
36,957	33.59	1	36.06	9	China, Peoples Republic of
100	0.09	48	38.46	8	Zimbabwe
0	0.00	68	0.00	68	Chad
300	0.27	34	12.50	41	Chile
0	0.00	68	0.00	68	Cameroon
1,672	1.52	15	22.29	21	Kazakhstan, Republic of
4,174	3.79	5	49.11	6	Canada
75	0.07	52	8.33	55	Kenya
25	0.02	64	13.16	37	Costa Rica
25	0.02	64	10.00	51	Cote d'Ivoire
66	0.06	56	5.20	61	Colombia
35	0.03	61	10.39	48	Congo, Democratic Rep of the
0	0.00	68	0.00	68	Congo (Brazzaville)
0	0.00	68	0.00	68	Cuba
0	0.00	68	0.00	68	Kuwait
81	0.07	52	12.96	39	Croatia
202	0.18	41	18.45	29	Kyrgyzstan, Republic of
275	0.25	36	25.94	16	Taiwan
50	0.05	57	4.07	65	Tajikistan, Republic of
0	0.00	68	0.00	68	Tanzania, United Republic of
286	0.26	35	24.87	18	Thailand
737	0.67	23	4.47	64	Turkey
0	0.00	68	0.00	68	Togo
475	0.43	28	26.39	15	Turkmenistan
825	0.75	20	30.00	12	Tunisia
0	0.00	68	0.00	68	Trinidad and Tobago
0	0.00	68	0.00	68	Panama
147	0.13	45	39.20	7	Paraguay
2,596	2.36	11	11.59	45	Pakistan
0	0.00	68	0.00	68	Papua New Guinea
268	0.24	38	17.87	30	Peru
0	0.00	68	0.00	68	Fiji
204	0.19	40	8.00	56	Philippines
820	0.75	20	27.33	14	Korea, Republic of
0	0.00	68	0.00	68	Hong Kong
110,023	100		18		World Total

캐나다 농업의 이해

캐나다 직무훈련 파견 허태웅 과장

결실과 장미



크건 작건간에,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자 하는 이는
허리를 굽혀서 땅을 파야만 한다.

소망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극히 적은 까닭에
우리가 원하는 가치있는 것은 무엇이건
일함으로써 얻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의 비밀이 여기 쉬고 있기에
당신은 끊임없이 흙을 파야한다
결실이나 장미를 얻기 위해선

_ 에드가 게스트

캐나다 농업의 이해

캐나다 직무훈련 파견 허태웅 과장

1. 캐나다의 경제 및 농업현황

캐나다의 총인구는 31,744천명(2005년기준)으로 한국의 66%로 한국보다 적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7%이상 증가한 수준이나 농업관련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캐나다 농업인구는 총인구의 2.3%에 해당하는 710천명이며, 농촌경제활동 인구는 353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0% 수준으로 이는 1990년에 비해 30만이 상 농업인구가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인구도 30%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감소폭은 한국에 비해 작은 수준으로 2000년에 들어 거의 정체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 대비 캐나다의 농업인구 비중은 총인구(2005년)의 3.7%에서 2.0%로 1.7%p 하락한 반면, 한국의 농업인구 비중은 동기간 동안 16.1%에서 6.8%로 9.3%p 하락하였다.

농촌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동안 캐나다는 전체경제활동인구의 3.4%에서 2.1%로 1.3%p 하락한 반면, 한국은 18.1%에서 8.2%로 9.9%p 하락하였다.

		1990	1998	2001	2003	2005	비고(BC주)
캐 나 다	총인구	27,701천명	30,232	31,025	31,510	31,744	-2006년 기준BC주의 농업인구는 6만명정도로 전체인구 210만의2.9%
	농업인구	1,012천명	827	766	728	710	
	비중(%)	3.7%	2.7%	2.5%	2.3%	2.2%	
	경제활동인구	14,647천명	16,231	16,726	16,996	17,650	
	농촌경제활동인구	494천명	409	381	362	353	
	비중(%)	3.4%	2.5%	2.3%	2.1%	2.0%	
대 한 민 국	총인구	42,896천명	46,172	47,142	47,700	47,951	-농장수는 19,844개로 농장당 약3명이종사 · 특용작물, 육우,과수순
	농업인구	6,917천명	4,595	3,882	3,455	3,255	
	비중(%)	16.1%	10.0%	8.2%	7.2%	6.8%	
	경제활동인구	19,633천명	23,120	24,288	24,882	25,078	
	농촌경제활동인구	3,555천명	2,606	2,271	2,049	1,944	
	비중(%)	18.1%	11.3%	9.4%	8.2%	7.8%	

주 : 농업인구는 생계를 농업에 의존하는 모든 개인으로 정의되며, 농업경제활동인구와 그 부양가족이 포함됨
(자료 : 국제농업식량기구, BC주 2007통계)

한국과 캐나다의 농촌인구 변화의 특징은 양국 모두 감소추세이나, 캐나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한국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 아직도 한국의 농업인구는 캐나다의 5배수준이고 총인구대비 농업인구비중도 3배이상 많아 농업인구에 대한 정치적 민감도는 한국이 높은 편으로 캐나다의 국토면적은 997백만ha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국가이며, 이는 남한면적의 약 100배에 해당(2005년 기준)된다.

캐나다의 농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의 7.3%인 68백만ha로 한국 농지면적의 35배 수준(2005년 기준)으로 전체 농지 중 경지면적과 목초지의 비중은 캐나다가 각각 67.6%와 22.8%, 한국이 86.4%와 2.9%를 차지하고 있어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초지의 비중이 높다.

	캐나다							한국
	1991	1997	1999	2001	2002	2003	2005	2005
총면적	997,061	997,061	997,061	997,061	997,061	997,061	997,061	9,926
토지면적(A)	922,097	922,097	922,097	922,097	922,097	922,097	909,351	9,873
농지(B)	67,753	67,994	67,723	67,502	67,505	67,505	67,500	1,881
B/A	7.3%	7.4%	7.3%	7.3%	7.3%	7.3%	7.3%	19.1%
농	경지면적(C)	45,570	45,599	45,739	45,880	45,660	45,660	1,625
	C/B	67.3%	67.1%	67.5%	68.0%	67.6%	67.6%	96.8%
지	다년생 재배면적	6,220	6,777	6,504	6,231	6,455	6,455	200
	목초지(D)	15,963	15,568	15,480	15,391	15,390	15,390	56
	D/B	23.6%	22.9%	22.9%	22.8%	22.8%	22.8%	2.9%

주 : 농지 중 경지면적, 목초지 면적은 FAO 통계자료가 없어 캐나다는 2002년 자료를 활용, 한국은 농산물품질 관리원자료를 활용 (자료: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2005 기준 캐나다의 총생산액 중 농림어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199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총생산액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6.3%수준이었으나, 2003년 3.8%, 2005년은 3.7%로 2.6%p 감소하였다.

단위 : 백만 US\$

		1995	2001	2003	2004	2005	비고
캐나다	총생산액	841,786	1,015,000	1,091,378	1,126,802	1,160,024	BC주는 주전체 GDP에서 농림 어업이 2.13% 차지 ('06)하여 점차감소추세 -('01)2.57%
	농림어업 생산액	20,815	23,122	25,478	27,786	28,437	
	비중	2.5%	2.3%	2.3%	2.5%	2.5%	
대한민국	총생산액	577,994	817,362	922,485	996,402	1,067,214	
	농림어업 생산액	36,414	36,781	35,504	40,126	39,355	
	비중	6.3%	4.5%	3.8%	4.0%	3.7%	

자료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캐나다 농업센서스('06)

총생산액 대비 농림어업생산액 비중은 양국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의 감소 폭은 큰 반면, 캐나다는 2.5%내외를 유지하며 거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전체 산업 생산증가에 비해 농업생산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체 산업 생산증가에 비해 농업생산 비중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BC 주도 점차 농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보다 감소추세가 완만하다.

※ '01) 2.57% → '02)2.32% → '03)2.18% → '04)2.19% → '05)2.22% → '06)3.13%
 • 분야별('06)로는 일반농업 0.58%, 축산업 0.18% 농업자재 0.07%, 식품업 1.09%,
 음료시장 0.22%의 주 GDP대비 생산비중을 갖고 있음

2007년 캐나다 전체 농가현금수입액(Farm Cash Receipt)은 40,379백만C\$로 2003년 34,419백만C\$보다 17.3%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밀, 보리 등 작물류(crop)가 181억C\$,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181억C\$, 그 외 기타 수익이 41억C\$ 수준이었다.

품목별로는 작물류 중에 밀이 42억C\$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캐놀라(34억C\$)이고, 축산물 중에는 쇠고기가 가장 높은 62억C\$ 수준이며, 낙농 51억C\$, 돼지고기 33억C\$, 가금류 21억C\$ 순이다.

단위 : CAD천\$

	2003	2004	2005	2006	2007
총농가수입액	34,419,829	36,470,624	36,683,856	36,883,734	40,379,382
작물(Crops)	13,400,716	14,464,290	13,463,667	14,522,901	18,146,615
밀	2,526,393	3,035,382	2,495,122	2,824,889	4,193,102
귀리	244,503	231,377	256,827	331,509	447,464
보리	436,857	585,891	451,988	441,190	793,461
호밀	12,440	29,457	13,050	15,913	33,256
아마인	192,160	198,714	171,004	158,775	233,401
캐놀라(유채)	1,889,576	2,151,363	1,826,137	2,502,333	3,426,927
팻옥수수	786,685	794,416	622,774	737,808	1,048,266
대두	758,345	630,764	760,350	681,345	1,048,266
건조완두콩	253,495	342,672	306,233	316,795	522,338
겨자	80,851	78,916	60,302	51,951	71,240
해바라기	50,870	32,101	19,705	34,979	55,994
편두(렌즈콩)	156,328	205,184	216,046	198,339	247,923
Canary 씨	76,704	54,886	39,778	46,627	70,205
병아리콩	57,973	26,932	29,445	57,979	94,392
건조콩	141,843	151,916	155,345	153,268	164,723
기타 작물	5,753,303	5,909,234	5,794,969	6,074,930	5,963,746
이월 곡물수입	-17,610	5,085	244,592	-105,729	-236,572
축산물(Livestock)	16,170,994	17,144,069	18,296,767	17,833,891	18,142,945
소	5,119,181	5,073,526	6,286,628	6,400,822	6,219,904
돼지	3,442,646	4,269,870	3,948,452	3,426,737	3,342,058
낙농	4,480,779	4,598,535	4,841,889	4,833,132	5,196,688
양	100,854	84,333	110,585	132,303	125,230
가금	1,791,059	1,847,555	1,886,675	1,823,537	2,067,409
계란	570,337	560,448	540,508	555,185	566,865
기타	666,138	709,802	682,630	662,175	624,791
Payments	4,848,116	4,862,265	4,923,422	4,526,942	4,089,822
수입안정계정	723,065	934,140	442,340	316,950	272,384
재해보험	1,811,992	864,528	936,376	739,100	761,634
재해지원프로그램	440,331	1,014,044	1,777,161	2,760,427	2,148,539
주정부안정지원	711,321	626,336	390,763	496,919	837,851
기타지원프로그램	1,161,407	1,423,217	1,376,782	213,546	69,414

자료 : Statistics Canada, CANSIM, table(for fee)002-0001

2. 농산물 생산현황

● 곡물류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곡물류재배면적은 17백만 ha로 전체 경지면적의 약 1/3을 차지하며 밀, 보리, 귀리 순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1992년 대비 15.4% 감소한 수치로 매년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밀의 재배면적은 약 10백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약 20%, 곡물류 재배면적의 약 62%를 차지하고 그 외 재배면적 비중이 큰 작물로 보리, 귀리, 옥수수 등이 있으며, 밀과 더불어 4대 작물의 재배면적은 전체 곡물류 재배면적의 96% 이상을 차지

- 캐나다 곡물류 재배면적

단위: 천 ha

	1992	1996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밀	13,830	12,262	10,855	8,836	10,413	9,885	9,653	10,534	-BC주는 보리,귀리, 밀등을 각각 14천ha씩 비슷하게 재배 -'05년은 보리를 가장 많이 재배
보리	3,792	4,888	4,450	3,348	4,735	4,050	3,889	3,362	
귀리	1,243	1,684	1,299	1,379	1,575	1,320	1,326	1,431	
옥수수	858	1,090	1,088	1,283	1,226	1,072	1,096	1,093	
호밀	144	162	115	77	147	165	148	130	
메밀	17	17	15	12	9	4	4	6	
기타	292	463	329	372	418	457	457	234	
합계	20,176	20,566	18,150	15,306	18,288	16,930	16,602	16,790	

자료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캐나다 농업센서스('06)

2006년 캐나다의 곡물류 생산은 1992년에 비해 2.5% 증가한 50,895천톤이며, 주요 작물은 밀, 보리, 옥수수, 귀리 등이고, 밀은 캐나다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2006년 생산량은 27백만 톤으로, 전 세계 밀 생산량의 약 2%를 차지

1992년 이후 캐나다 곡물류 생산은 50백만톤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감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추세임

밀은 27백만톤대를 유지하여 곡물생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리 옥수수, 귀리 순임

특히 2002년 캐나다의 곡물 생산은 밀, 보리의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 후 점차 회복하여 안정되고 있음

- 캐나다 주요 곡물류 생산

단위: 천톤

	1992	1996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밀	29,877	29,801	26,536	16,198	23,552	25,860	26,775	27,277	BC주의 곡물 재배 농가수는 과거 10년전에 비해 절반수준
보리	11,032	15,562	13,229	7,489	12,328	13,186	12,481	10,004	
옥수수	4,883	7,536	6,954	8,999	9,587	8,836	9,461	9,268	
귀리	2,829	4,361	3,403	2,911	3,691	3,680	3,432	3,602	
호밀	281	309	260	134	327	418	359	302	
메밀	11	22	14	12	10	2	5	7	
곡물류계	49,648	58,494	51,038	36,303	50,174	52,684	53,086	50,895	

자료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캐나다 농업센서스('06)

● 채소류

캐나다 채소류 재배면적은 93천ha('06년)로 2000년대 초반 증가추세이던 것이 상당히 감소 추세이며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며, '06년 기준으로 풋옥수수 재배면적이 22.3천ha로 가장 완두콩, 양배추 등의 순이며 당근과 토마토의 비교적 넓은 편이다.

그 밖에 오이, 수박, 참외, 고추 등 대부분의 채소작물의 재배면적은 5천ha미만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풋옥수수 및 완두콩 등의 재배면적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당근, 토마토, 양파 등의 면적은 안정세이거나 소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 캐나다 채소류 재배면적

단위: 천 ha

	1992	1996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풋옥수수	33.1	35.5	30.8	30.3	30.6	26.3	24.8	22.3	BC주 채소 재배농가수는 증가하다 최근 감소 추세임
완두콩	17.8	16.0	18.0	15.8	17.5	16.8	15.6	11.3	
깍지콩	6.6	8.4	9.0	10.7	11.0	10.7	9.1	7.3	
양배추	8.6	9.2	8.3	8.8	9.2	9.4	8.2	8.4	
당근	7.3	8.9	8.0	8.3	9.5	8.8	7.8	7.3	
토마토	11.3	10.3	7.8	9.3	8.6	8.3	8.7	7.4	
양파	4.3	4.8	4.9	5.4	5.7	5.6	5.6	6.4	
합계	106.1	113.8	109.1	112.5	115.9	109.6	101.7	93.1	

자료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캐나다 농업센서스('06)

캐나다의 채소류 생산량은 224만 톤('06년)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04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토마토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채소작물로 매년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2006년에는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감소 이외에 당근, 풋옥수수(green corn), 양파, 양배추 순으로 생산량이 많음

- 캐나다 주요 채소류 생산

단위 : 천톤

	1992	1996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토마토	473.9	637.0	701.3	792.0	717.4	806.8	839.2	579.2	BC주는 - 풋옥수수 8.3 - 상추 7.4 - 토마토 1.0 - 브로콜리 2.1 - 최근 상추 재배 급증
당근	293.9	320.4	261.3	286.5	313.3	293.8	292.8	303.6	
풋옥수수	308.1	345.9	259.6	275.2	323.5	286.3	252.3	242.7	
양배추	166.5	181.3	164.7	159.0	178.5	198.0	180.4	162.5	
양파	127.5	182.8	189.4	168.2	172.4	190.3	170.1	229.0	
완두콩	73.2	65.8	75.9	58.2	76.3	66.7	60.0	46.3	
깍지콩	43.5	42.8	55.4	55.7	66.0	62.5	55.7	43.0	
합계	1,896	2,311	2,294	2,398	2,455	2,508	2,475	2,241	

자료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캐나다 농업센서스('06)

캐나다의 채소 생산은 노지채소는 감소하는 반면, 시설채소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BC주의 경우 매년 성장추세임

캐나다의 시설채소의 생산량은 349.4천 톤('02)을 기록하여 '93년 대비 303% 증가하였고 품목별로는 시설재배 토마토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짐

- '94년 32.8천톤 → '02년 217.7천톤

BC주의 경우 210백만CAD \$('01~'05년 평균)에서 '06년에는 236백만 CAD\$로 10%이상 성장하였고 특히 동양계 이민자의 소비가 늘고 재배자도 동양계가 큰 폭으로 증가

● 과일류

캐나다의 과일류 재배면적은 69천ha로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품목별 재배면적은 사과와 블루베리를 제외하

고 대부분 10ha미만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하며 블루베리와 포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크게 감소추세를 보였음

- 캐나다 과일류 생산면적

단위: 천ha

	1992	1996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블루베리	18.2	19.9	23.9	24.0	23.3	26.1	29.5	30.2	BC주의과실류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사과	32.1	29.4	25.3	20.6	21.6	20.8	19.1	17.4	
포도	6.2	7.0	7.5	9.0	8.9	9.5	9.8	9.9	
딸기	5.2	5.4	4.3	4.7	4.5	4.2	2.9	2.3	
복숭아	4.0	3.3	2.6	2.8	2.9	2.8	2.5	2.4	
배	2.2	2.0	1.3	1.3	1.3	1.1	1.1	1.0	
합계	75.7	74.9	72.2	71.0	71.4	73.4	70.6	69.2	

자료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캐나다 농업센서스('06)

캐나다 과일류 생산은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미국과 FTA체결 후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1992년 대비 약10%이상 감소한 63만 톤으로 전체적으로 블루베리 및 포도를 제외하고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였음.

품목별로는 사과의 생산량이 37만 톤으로 가장 많으나 '92년에 비해 20만톤 이상 감소하여 생산량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

그러나 요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블루베리와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있는 포도의 경우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룸

- 캐나다 주요 과실류 생산

단위 : 천톤

	1992	1996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사과	564.1	513.0	542.6	381.9	379.2	370.3	408.6	340.2	BC주의 미국과 FTA후 타주에 비해 많이 생산량이 감소
블루베리	39.0	49.1	59.0	64.9	78.6	79.2	137.2	128.6	
포도	54.7	57.8	63.7	67.1	54.8	78.1	45.1	78.8	
복숭아	40.2	41.0	33.3	28.8	29.2	29.8	22.5	24.4	
딸기	29.5	27.9	23.8	25.1	24.5	24.6	12.8	10.0	
배	21.2	17.4	16.3	14.9	15.2	14.4	10.7	12.4	
합계	799.2	760.9	804.7	662.8	666.7	689.6	678.9	630.7	

자료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BC는 '06년 자료('06년농업센서스)

캐나다는 과일 생산기반이 약하고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일부 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음. 특히 사과는 전체 과일류 생산의 50%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며, '99년 이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육류

축산업은 캐나다에서 자동차, 석유산업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큰 산업으로 전체 농가경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이다가 최근에는 안정된 추세임

캐나다는 세계적인 축산 강대국으로 목초지 비중이 높고, 사료용 곡물의 생산이 풍부하여 가축을 사육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음

연도별 가축의 도축두수 및 축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간에는 소폭 감소 및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BC주의 경우 투주에 비해 축산업 비중이 높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소 및 젓소의 사육 비중이 타 종에 비해 높음

소의 경우는 증가하다 최근 안정세이며 돼지는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닭 등 가금류는 큰 폭으로 증가추세

- 캐나다 주요 가축 도축 두수

단위 : 천수(닭은 백만수)

	1992	1996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BC)
소	3,232	3,506	3,836	3,837	3,538	4,300	4,555	4,155	83
돼지	15,468	15,178	19,648	22,154	22,465	23,000	22,339	21,795	232
닭*	409	501	590	626	616	613	626	622	18
젓소	1,283	1,237	1,103	1,084	1,065	1,057	1,066	1,066	소에 포함

주 : 닭의 경우 단위가 백만수(자료: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BC는 '06년 자료('06년농업센서스)

2004년 캐나다 주요 축산물 생산량은 1990년에 비해 최고 72% 증가 200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193만 톤으로 1990년 대비 71.7%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2006년 가축 생산량은 우유, 돼지고기, 쇠고기 순이며 쇠고기 생산량은 1992년 대비 55% 증가한 139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2.5%를 차지

쇠고기는 감소추세이나 검역문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생산량은 꾸준히 상승 및 안정세임. 특히 캐나다는 세계 제12위의 쇠고기 생산국이며, 호주, 미국, 브라질,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5대 쇠고기 수출국임

- 캐나다 주요 축산물 생산량

단위 : 천톤

	1992	1996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BC)
쇠고기	899	1,017	1,263	1,294	1,190	1,460	1,523	1,391	닭고기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축종은 감소추세
돼지고기	1,208	1,228	1,640	1,858	1,882	1,930	1,914	1,898	
닭고기	601	746	904	956	954	970	1,000	997	
우유	7,633	7,890	8,090	7,964	8,050	8,000	7,595	7,595	
계란	320	330	372	392	393	377	399	400	

자료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캐나다 농업센서스('06)

● 기타 두류·서류 등

대두와 유채 등 식물성 유지작물과 감자(냉동)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수출전략작물로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임.

특히 유채의 경우 2006년 재배면적이 약 5백만ha로 199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바이오 에너지 등과 관련하여 계속 증가추세이며 캐나다 전체재배면적의 약 10%를 차지

2006년 대두 재배면적은 1992년 대비 963% 증가한 1.2백만ha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아마종실의 경우 1992년에 비해 2006년 재배면적이 3배이상 늘었고 겨자씨 및 감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2000년 이후 들어서는 타작물과 달리 감소추세로 전환

* BC주의 경우는 기타 두류·서류 등의 재배는 많지 않으나 화훼, 관상수 등의 재배가 급증하고 있음

BC주 감자재배면적(천ha) : ('91) 3.3 → ('96) 3.6 → ('01) 3.5 → ('06) 3.4

- 캐나다 기타 농산물 재배현황

단위 : 천ha

	1992	1996	2000	2002	2003	2005	2005	2006	비고(BC)
유채	3,045	3,451	4,859	3,426	4,689	4,938	5,283	5,322	BC주는 버섯, 화훼 관 상수 등의 재배가 최근 급증
대두	623	856	1,061	1,024	1,047	1,178	1,169	1,226	
아마종실	253	575	591	633	728	528	803	826	
겨자씨	110	233	208	255	328	304	206	140	
감자	124	147	159	171	181	171	155	157	

자료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캐나다 농업센서스('06)

전반적인 과일류와 채소류의 생산비중은 낮으나, 유채, 감자, 대두는 생산비중이 매우 높고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2006년 유채 생산량은 910만 톤으로 1992년 대비 135%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2006년 감자 생산량은 1992년 대비 38.5% 증가한 500만톤 으로 매년 증가하다 2005년에 감소 후 다시 증가. 2006년 대두 생산량은 동기간 동안 144.5% 증가한 353만 톤으로 2000년대 초 감소하다 다시 증가

- 캐나다 기타 농산물 생산

단위 : 천톤

	1922	1996	2000	2002	2003	2004	2005	2006	비고
유채씨	3,872	5,062	7,205	4,407	6,771	7,728	9,660	9,105	BC주는 기업농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정체
감자	3,607	4,085	4,567	4,705	5,282	5,171	4,386	4,995	
대두	1,455	2,170	2,703	2,336	2,268	3,048	3,161	3,533	
아마인씨	337	851	693	679	754	517	1,082	1,041	
겨자씨	133	231	202	154	226	306	201	116	

자료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캐나다 농업센서스('06)

3. 농산물소비 및 가격현황

농산물의 농가생산물가지수는 1997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6년 농축산물 전체로는 107.8로 비교적 교역조건이 양호하고 안정된 모습 대부분의 농산물이 5~10%p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곡물, 돼지, 가금은 하향, 과일류, 채소류는 5%이상 상승하였음. 이는 최근 유기농산물 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봄

식용작물류 전체적으로는 2006년에는 5.8%p의 물가격지수 상승을 보임

곡물류, 오일류, 특용작물은 각각 18.1%p, 21.1%p, 29.1%p의 지수하락이 있었으나 과일류, 채소류, 감자는 각각 6%p, 4.7%p, 72.4%p의 가격지수 상승이 있었음

축산물 전체로는 2006년에 8%p가격지수 상승을 보임

소, 돼지, 가금, 계란, 젓소의 각각의 농가생산가격 지수는 121.9, 90.8, 94.8, 105, 113으로 1997년에 비해 21.9, -9.2, 5.2, 5의 변동이 있었음

- 캐나다(BC주) 농가 생산가격지수(1997년=100)

	2002	2003	2004	2005	2006
곡물류	125.6	126.4	111.8	82.6	81.9
오일류	96.0	95.0	95.7	70.2	78.9
특용작물	108.6	86.4	85.9	63.6	70.7
과일류	93.3	101.5	103.7	104.1	106.0
채소류	114.2	117.9	109.6	101.7	104.7
감자	179.7	149.5	143.7	142.5	172.4
작물류 소계	107.3	111.4	107.5	102.3	105.8
소	123.6	106.7	88.9	124.3	121.9
돼지	77.8	76.5	96.7	98.2	96.8
가금	87.4	91.4	93.4	96.7	94.8
계란	104.2	110.0	115.0	104.2	105.0
우유	110.1	114.0	108.4	11.6	113.0
축산물 소계	105.1	103.7	99.5	109.6	108.8
전농축산물	106.5	107.7	103.6	106.4	107.8

자료 : Statistics Canada CANSIM('07)

농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년 전체 품목의 물가상승보다는 적은 지수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가의 경영에는 나쁜 영향을 보였음, 특히 농가의 투입재 가격지수는 농가 생산물가격지수 보다 향후 월등해 농가의 구조조정 및 농산물 가격 상승의 압박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음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6년 108.1로 매년 평균 2%P의 상승이 있었고 농식품의 경우는 106.5로 1.5%정도의 상승을 보였음

2006년 소비지 상점에서 농식품 물가지수는 105.1, 음식점에서는 109.8로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물가상승압력은 적은 것으로 조사

그러나 2006년 농가단위에서 농가생산 가격지수는 107.8로 투입재 가격상승 지수 143.5보다 현저히 낮아 농가 및 정부의 소득안정프로그램의 지출이 많았음
 캐나다(BC주) 농식품관련 가격(물가)지수(농가기준은 '97년, 기타 상품은 '02년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농가투입가격지수	132.9	130.9	137.5	131.6	138.9	143.5
농가생산가격지수	102.0	106.5	107.7	103.6	106.4	107.8
전상품가격지수(CPI)	97.7	100.0	102.2	104.2	106.3	108.1
농식품	97.4	100.0	101.9	103.2	104.5	106.5
판매처식품	97.7	100.0	102.0	130.0	103.5	105.1
음식점	96.8	100.0	101.8	103.6	106.6	109.3

자료 : Statistics Canada CANSIM('07)

곡물류의 가격은 최근 '07년과 '08년의 급격한 상승과는 달리 '06년까지 계속 하락하였으며 축산물은 안정세, 채소류 및 과일류는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

이는 과채류와 과일류의 유기농산물 유통이 급속히 확대되어 품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품질이 동일할 경우는 가격은 하향안정세를 보임

특히, 보리의 경우 '04년에 비해 '06년에는 62%이상 가격이 하락하였고 밀 역시 24%이상 하락하여 곡물재배농가의 소득감소가 많았음

과실류와 과채류의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사과의 경우 미국과 FTA로 인한 급격한 재배면적감소와 친환경재배로 인해 가격이 300% 상승, 체리 240%, 배 225%의 가격상승을 보였고, 과채류인 블루베리, 스토베리 역시 건강식품 열기에 힘입어 각각 167%, 141%의 가격상승을 보였음

또한 신선채소류 등의 채소류 역시 상당한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음

옥수수(신선)의 소비 증가로 244% 가격상승, 솔리플라워 177%, 브로콜리 및 버섯의 가격이 각각 123% 상승하여 웰빙 및 다이어트 농식품의 가격상승이 큼 기타 동양계 이민자의 증가로 그린콩 (186% 가격상승), 강낭콩(100%) 등도 상당한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음

과실류와는 곡물류와 비교할 때 달리 축산물은 비교적 가격변동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쇠고기는 상승추세, 돼지고기는 하향 추세이며 가금류 및 우유는 안정세

쇠고기는 501-600lb인 숫소의 단위무계당 가격이 제일 높는데 2004년에 비해 대체로 30%이상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어미소와 황소는 일반 숫소 가격의 1/3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가격상승폭은 상대적으로 50%내외로 큼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달리 가격이 2004년에 비해 18%이상 하락 하였음

양고기는(95- 115lbs)는 51%이상 가격이 상승 우유의 평균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2005년 상승하였으나 다시 2004년 수준으로 하락

가금류는 전반적으로 10%정도의 가격하락을 보였음
 계란가격 역시 고기가격과 마찬가지로 10%정도 낮은 가격을 보였음

- 캐나다의 농산물 평균 농가수취가격

품목	2004	2005	2006	품목	2004	2005	2006
과일(목) \$/kg 사과	0.10	0.31	0.41	감자	0.47	0.50	-
배	0.20	0.59	0.65	토마토(노지)	0.53	1.04	1.00
복숭아	0.35	0.85	0.86	가축(\$/cwt) 숫소(501-600lb)	92.19	115.66	122.48
아프리카트	0.45	1.09	1.02	숫소(601-700lb)	87.66	115.55	115.47
체리	0.86	3.56	2.92	숫소(701-800lb)	84.28	103.26	108.43
딸기 및 포도(\$/kg)				숫소(801-900lb)	79.19	98.41	102.64
스토베리	1.12	3.08	2.70	암소(601-700lb)	78.64	99.50	105.39
라스베리	1.04	1.49	1.42	D 1,2 어미소	20.24	26.09	31.17
블루베리	1.08	2.27	2.88	황소	20.52	28.07	30.22
크랜베리	0.41	0.80	0.91	돼지	72.57	67.66	59.43
포도	0.80	1.78	1.85	양(95-115lbs)	106.44	148.51	160.78
채소(\$/kg) 아스파르가스	2.08	3.76	3.19	우유(\$/l)	0.61	0.64	0.61
강낭콩	0.35	0.64	0.70	가금(\$/kg) 닭	1.24	1.30	1.29
브로콜리	0.47	1.11	1.05	칠면조	1.61	1.46	1.47
당근	0.69	0.62	-	새끼 수컷칠면조	1.59	1.52	1.44
솔리플라워	0.47	1.13	1.30	새끼 암컷칠면조	1.56	1.42	1.43
옥수수	0.18	0.56	0.62	계란(\$/12개)	1.27	1.15	1.14
상추	0.38	0.61	0.66	곡물(\$/톤) 밀	108.22	89.38	82.28
버섯	1.33	3.05	2.97	보리	70.75	26.02	26.79
양파	0.19	0.45	-	귀리	113.14	110.45	117.28
그린콩	0.22	0.68	0.63	캐놀라	345.74	253.49	284.96

자료 : Statistics Canada, Canfax 2006 annual report, Agriculture & Agri-Food Canada Poultry Marketplace, Vancouver annual prices.

캐나다인들의 1인당 농식품소비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변동은 없으나 건강식품 중심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소비가 늘고 있는 품목은 건강식품인 블루베리와 기호식품인 와인이 각각 51.2%와 12.6%이상 2004년에 비해 늘었으며, 이들의 농가 수취가격 역시 증가하고 있음

고추는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와 캐나다인의 동양음식선호도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요구르트와 양고기의 소비도 꾸준히 증가 추세

반면에 생선과 돼지고기 등의 소비와 토마토의 소비는 크게 감소하였음.

특히 생선소비는 16%이상 감소추세이고 돼지고기의 소비도 12% 이상감소 토마토와 감자는 다른 건강식품과 다양한 식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파악됨

- 캐나다의 주요 농식품의 국민 1인당 소비량

품목	2004	2005	2006	04대비 06증감 (%)	품목	2004	2005	2006	04대비 06증감 (%)
쇠고기(kg)	13.1	13.15	13.43	2.52	아이스크림(ℓ)	6.25	6.22	5.79	-7.36
돼지고기(kg)	10.97	9.53	9.65	-12.03	신선사과(kg)	6.74	7.21	6.82	1.19
양고기(kg)	0.42	0.44	0.46	9.52	사과주스(ℓ)	10.08	10.33	10.06	-0.20
닭고기(kg)	10.29	10.54	10.67	3.69	신선블루베리(kg)	0.33	0.53	0.50	51.52
칠면조(kg)	2.12	2.25	2.22	4.72	신선크랜베리(kg)	0.39	0.58	0.41	5.13
계란(12개)	12.2	12.31	12.32	0.98	토마토(kg)	4.98	4.63	4.60	-7.63
생선(kg)	7.71	6.45	6.47	-16.08	버섯(kg)	0.88	0.88	0.89	1.14
우유(표준 ℓ)	9.4	8.87	8.63	-8.19	고추(kg)	1.98	2.27	2.25	13.64
우유(2% ℓ)	23.38	27.31	27.01	15.53	감자(흰색) (kg)	30.73	29.11	28.78	-6.35
체다 치즈(kg)	2.54	2.67	2.72	7.09	맥주(ℓ)	78.87	76.46	76.79	-2.64
요구르트(ℓ)	4.12	4.76	4.92	19.42	와인(ℓ)	12.3	13.19	13.85	12.60
cottage 치즈(kg)	0.56	0.6	0.6	7.14	청량음료(ℓ)	92.83	87.05	84.77	-8.68

자료 : Statistics Canada

4. 농식품 자급률

캐나다의 농식품의 자급률은 과일,채소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를 넘고 있으며, 반면, 채소류, 과일류 등은 18%~60%수준으로 낮은 상태임

한편 육류는 가금육을 제외하고는 120~300%의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캐나다의 농산물 자급률은 품목별 구분이 명확함

● 품목별 자급률 현황

캐나다의 곡물류 평균자급률은 149%로 2000년이후 하락하다 다시 회복추세이며 캐나다 농식품의 주요 수출상품이며 수출여력을 보유하고 있음

품목별로는 밀이 291.4%로 가장 높으며, 캐나다 밀은 대부분은 제빵용으로 품질이 우수함. 귀리(162%), 호밀(135%), 보리(117%) 순이며, 쌀(0%)은 생산량이 전혀 없음. 반면 고온에서 잘자라는 옥수수(80%)는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음

두류와 유지식물류의 평균자급률은 각각 294.2%와 173.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서류 중에서는 감자의 자급률이 138.8%로 높음

두류 중에서는 건조콩이 541.0%로 가장 높고, 유지식물 중에서는 유채씨가 211.3%로 높은 수준임

육류의 평균자급률은 123.3%이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52.7%, 쇠고기 121.5%, 가금육 96.9% 수준임

한편, 채소류와 과일류의 자급률은 각각 59.2%와 19.1%이며, 특히 신선과일류의 자급률은 매우 낮음

과일류 중에서는 사과(87.4%)를 제외한 대부분이 10%대 미만의 자급률을 보여 수입의존도가 높고, 채소류는 토마토(71.3%)와 양파(65.4%)를 제외하고 대부분 매우 낮은 수준임

- 캐나다 주요 농식품 자급률

단위: %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곡물류(맥주보리제외)	170.2	166.3	143.2	119.7	145.6	149.0
밀	321.1	351.8	278.3	195.8	310.2	291.4
귀리	156.5	162.5	161.2	160.5	168.0	161.7
호밀	134.4	113.8	133.1	157.7	135.7	134.9
보리	118.2	119.3	121.7	110.4	117.0	117.3
옥수수	104.2	77.1	73.2	70.3	73.2	79.6
쌀	0.0	0.0	0.0	0.0	0.0	0.0
기타곡물류	138.7	142.9	150.4	167.2	168.7	153.6
서리	139.0	133.7	138.4	135.8	144.0	138.2
감자	141.4	136.3	141.4	138.5	146.8	140.9
고구마	0.0	0.0	0.0	0.0	0.0	0.0
두류	316.5	354.3	267.2	215.5	277.0	286.1
건조콩	493.3	529.7	440.5	854.1	468.1	557.1
완두콩	310.6	347.2	252.1	177.5	257.6	269.0
기타두류	297.2	346.9	269.1	210.6	286.1	282.0
유지식물류	218.7	177.9	131.8	141.1	154.8	164.9
유채씨	269.4	209.7	164.7	175.4	169.8	197.8
해바라기씨	170.5	133.6	130.2	189.4	192.4	163.2
유지용대두	125.3	123.5	71.6	95.0	109.0	104.9
기타유지식물	779.8	362.3	507.2	425.9	510.9	517.2
식물성기름	144.6	146.6	134.1	112.5	119.2	131.4
유채유	200.6	206.1	187.0	162.5	180.2	187.3
대두유	118.1	119.9	103.9	85.2	78.3	101.1
옥수수유	78.5	65.1	85.4	109.5	124.3	92.6
기타식물성기름	64.7	64.4	61.3	63.2	57.6	62.2

특별기고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채 소 류	60.1	58.7	58.6	57.6	59.3	58.9
토 마 토	69.9	71.8	70.1	74.7	77.4	72.8
양 파	64.4	66.1	66.9	62.7	60.7	64.2
기 타 채 소 류	56.2	53.1	53.7	50.7	53.3	53.4
설 탕 , 감 미 료	34.8	33.6	27.3	23.7	23.5	28.6
꿀	147.0	166.2	127.6	166.3	122.0	145.8
설 탕	10.4	9.9	6.7	3.9	6.6	7.5
기 타 감 미 료	151.0	140.3	96.3	69.7	67.5	105.0
과 일 - 포 도 주 제 외	22.6	19.9	18.1	16.2	17.0	18.8
사 과	94.9	93.7	88.1	72.8	99.5	89.8
포 도	20.2	16.1	17.5	16.7	13.6	16.8
오 렌 지, 멘 더 린	0.0	0.0	0.0	0.0	0.0	0.0
레 몬, 라 임	0.0	0.0	0.0	0.0	0.0	0.0
자 몽	0.0	0.0	0.0	0.0	0.0	0.0
기 타 과 일 류	27.3	25.9	25.0	24.7	26.9	26.0
육 류	119.8	123.2	126.2	130.1	128.7	125.6
돼 지 고 기	143.4	154.1	158.6	169.9	185.8	162.4
쇠 고 기	120.0	121.0	124.4	126.4	110.2	120.4
가 금 육	95.8	96.5	98.0	97.2	97.1	96.9
기 타 육 류	356.0	295.6	326.3	210.5	301.9	298.1
식 용 육 류 부 산 물	224.7	374.7	446.2	362.2	310.8	343.7
우 유 (버 터 제 외)	105.3	102.7	105.1	101.1	103.4	103.5
계 란	94.3	96.5	93.2	95.0	96.0	95.0
알 코 올 성 음 료	99.9	100.3	100.1	99.3	98.4	99.6
포 도 주	18.7	15.3	15.7	16.0	11.7	15.5
맥 주	109.2	110.1	111.1	108.3	108.6	109.5
발 효 음 료	101.6	104.7	106.3	106.2	102.6	104.3
알 코 올 음 료	186.6	173.9	149.0	149.1	163.6	164.4
사 탕 수 수 (b e e t)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해외 농업현장 방문 후기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식량안보 고위급회의를 다녀와서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박춘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지 아니?”

“흠... 글썽요, 돈버는 일? 밥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단다.”

_생텍쥐페리 소설 어린 왕자중에서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식량안보 고위급회의를 다녀와서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박춘근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인류의 영양상태, 식량 및 농림수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보급, 관련 활동의 장려를 위해 1945년 설립된 UN 상설 전문기구로 191개 회원국가로 구성된 기구다.

고위급회의 성격의 정상회의는 보통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이번 회의는 2007년 총회에서 FAO 사무총장이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라 세계 식량안보 및 농업·식량에 대한 인식 공유 목적으로 고위급회의를 제안하였고, 곡물가 급등이 국제이슈로 부상하면서 정상급회의로 격상되었다.

과거 식량관련 논의는 부국과 빈국간 농업생산성 및 생산량의 격차, 기아와 영양결핍의 문제였으나, 최근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식량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고, 일본에서 7월 개최될 G8 정상회의에서도 식량안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6.3일부터 6.5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 방문단은 박덕배 농림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하고 우리부 3, 외교통상부 1명 총 5명이 참여하였다.

첫날 개회식에는 우리나라가 배출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참석하며 기조연설을 했으며 우리민족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다.

각국 대표단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식량위기가 지속될 경우 MDGs 달성이 저해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반기문 사무총장이 TF를 구성하여 리더십을 발휘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의 사용확대, 곡물 수출제한, 보조금 지급, 개도국에 대한 지원 등 식량 위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FAO 총회 모습

일부 선진국들은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자국의 금전적 지원을 언급하였으나, FAO가 2007.12월에 발족시킨 17억불의 기금(ISFP; Initiative on Spring Food Prices)등 특정 기금을 명시하기보다는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지원 예정인 기금 총액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Giorgio Napolitano 이탈리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식량위기로 MDGs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식량권(right to food)이 침해받고 있다.”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은 식량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감소를 위해 시장구조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WTO 도하 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앞으로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지원하겠다.

반기문 UN사무총장도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TF는 다음을 권고한다. 첫째, 취약한 사람들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이용 가능한 식량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는 식량 원조의 증가, safety net 증가 등이 포함된다. 둘째, 더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

현재의 식량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상원조가 아닌 무상원조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유엔은 금번 회의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7월 G8 정상회담 및 9월 유엔 총회에 서도 식량안보 이슈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 FAO총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우리부 박덕배차관도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기후 변화, 바이오에너지 증가 등으로 국제 곡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절대 빈곤·기아인구 감소에 진전이 없었다. MDG(새천년개발목표)달성과 지구적 식량 위기 극복에 국제사회 협력 필요하다.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강구로 가격상승·수급불안 발생, 자유무역 체제하에 식량 수입국들의 식량안보가 위협받음에 따라 수출제한 조치는 제거되어야 하고, 필요시 단기적 조치로만 활용하고 개도국의 농업생산 확대 유지 지지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 및 식량안보와 양립하는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적 인도적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



FAO총회에서 연설중인 우리부 박덕배차관

FAO총회에 참석한 국가의 공동적인 입장은 선진국, 개도국 모두 MDGs 달성을 위해 식량안보 달성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WTO 도하 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반기문 사무총장이 TF를 결성하는 등 리더십을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현재의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 및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은 바이오 에너지의 사용이 식량 가격 상승 및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브라질은 바이오 에너지는 빈곤 국가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사회 성장에 기여하고(golden

revolution), 환경적으로도 clean energy이며 에너지 안보를 해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을 강조하고, 바이오 에너지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브라질은 식량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이 국제유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EU 의장국인 슬로베니아도 EU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사용이 식량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1% 이내임을 설명하며 2020년까지 바이오 에너지 사용을 10%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식량위기 해결 방안으로는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물적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개도국에서의 생산량 증가가 필요함을 설명하며, 자국의 구체적인 지원 실적 등을 설명하였다. (일본은 1억불의 food aid package 지원발표, EU는 500억 유로의 개발 및 인도적 지원금 이외에 227억 유로의 식량 추가지원 기금 마련 등)

개도국의 경우는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를 지속 주장하고 금융 기구의 개혁 및 부채 탕감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일본 등은 최대의 순수 식량 수입국으로 주요 수출국에서의 식량 수출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다수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지급하는 보조금 등으로 인해 시장 구조가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선진국들이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분야별 라운드 테이블도 개최되었는데 4가지 의제로 논의되었다.

① 식량위기 원인, 결과, 해결방안, ② 기후변화와 식량생산, ③ 초국경 해충과 질병확산, ④바이오에너지와 식량안보. 논의된 의제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량위기 원인, 결과, 해결 방안

○ 패널 발표

- Barbara Stocking (Oxfam International)

향후 수년간 곡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의 해결을 위해 행동이 필요함. 다만, 수년간 낮은 곡물 가격으로 인해 빈곤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농업생산자들이 곤란을 겪었으나, 이제 높은 가격으로 상황이 변했으므로, 올바른 정책과 기구가 뒷받침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

- Willem-Jan Laan (Unilever)

식량위기는 기후변화보다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바이오연료는 곡물가격에 큰 충격을 준 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식량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거의 어려움.

- Joachim Von Braun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현재의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즉각적으로는 긴급 지원, 농업 수출 제한의 철폐와 바이오 연료 정책의 전환 등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복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에는 투기(speculation)의 규제, 식량 수입 기금의 강화, 사회 보호 및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투자 증자, WTO 도하 라운드의 타결 등이 있음.

○ 회원국 반응

동 세션에서는 High-level segment에서 노정되었던 개도국과 선진국, 바이오 연료사용국과 비사용국, 주요 곡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 차이가 계속 나타났음.

2. 기후변화와 식량 생산

○ 패널 발표

- Martin Parry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함. 이를 위해 6월 본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회의와 7월 G8 정상회담에서 세계 정상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2009년 코펜하겐 회의의 시금석이 될 것임.

- Ulla Holm(Global Director, Tetra Pak Food for Development Office)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음식이 버려지고 있어 낭비되고 있고,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공공-민간 부문간 연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Tetra Pak Food for Development에서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도국의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지원해주고 있음.

- Martin Khor (Third World Network)
현재의 식량위기는 개도국에서 농업이 쇠퇴하여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고 외부 환경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임.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개도국에서 지역내 식량 생산을 증가시켜야 함. 아울러, 기존의 농업 방식은 질소산화물과 메탄가스 배출을 많이 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농경 방식이 organic farming으로 가야 함.

○ 회원국 반응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국가들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도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식량위기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며, 저탄소 에너지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등을 촉구함.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인 미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소개하며 이같은 노력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보임. 아울러, 미국의 GDP 성장 규모에 비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매우 미미한 편임을 함께 언급함.

3. 초국경 해충과 질병 확산

○ 패널 발표 : Taghi Farvar (IUCN)

해충과 질병은 국경을 넘어 다니며 식량생산에 위협을 가하므로 우선 국경 통제가 중요함.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

- Declan O'Brien (IFAH)

최근 새로운 질병 출현뿐만이 아니라 기존 질병이 점점 더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국제사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Hans Herren (Millenium Institute)

해충 및 질병의 통제를 위해 장단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통제의 문제는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 고려하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 회원국 반응

EU, 네덜란드 등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기경보제도의 도입을 통한 피해의 감소 등을 언급함. 반면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조기경보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4. 바이오 에너지와 식량안보

○ 패널 발표

- Pat Mooney (Action Group on Erosion, Technology and Concentration)
바이오에너지는 정치적, 기술적으로 상당히 빠른 전환을 겪은 의제임. 바이오에너지 생산국들은 sustainable한 방향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언급하는데, 동 의미가 모호함.
- Ibrahim Assaine Mayaki (The Rural Hub)
곡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업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수립이 중요함. 또한 적절한 financing system이 중요함.

○ 회원국 반응

브라질, 미국 등 바이오 연료 주요 사용국은 바이오 에너지가 식량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곡물을 사용하지 않는 바이오 에너지 2세대의 경우 식량 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함(특히, 미국은 수확억불을 바이오에너지 2세대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Energy Security Act를 통과시켰음을 설명)

반면, 중국 및 여타 개도국의 경우 에너지 안보 문제보다 식량 문제가 더 우위에 있음을 언급하며 바이오 연료의 사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FAO총회를 마무리하면서 선언문을 채택하였는데 선언문 주요내용은 식량안보를 항구적 국가정책의 문제로 보고, 96년 세계 식량정상회의의 목적과 MDG에 대한 서약을 다시 새롭게 하며, 다음 조치를 할 것을 약속하면서

즉각적/단기적 방안으로 모든 공여국과 UN시스템에 대 개도국 지원확대를 촉

구함과 아울러 유엔 Agencies들의 식량지원 확대·제고 및 safety net 프로그램 지지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긴급식량안보지원 체제를 갖춘 관련 지역기구의 협력을 제고하며 국제 긴급 식량지원의 신속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해 국가단위 및 국제적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간중심의 정책 framework 도입, 현 식량 생산시스템이 기후 변화로 야기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국제사회의 식량/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 증진 촉구, 농업 분야에서의 무역 자유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바이오 연료로 야기된 도전과 기회의 대처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FAO로 하여금 WFP, IFAD, 기타 다른 관련 국제기구들, UN High-Level TF와 함께 정부, 민간, 시민분야와 함께 모든 방면에서 세계식량안보를 분석, 모니터링 할 것을 요청하면서 유엔시스템 및 관련 국제기구의 효과적/효율적 자원활용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금번 회의에 총 181개국이 참석(이중 정상급 : 43명, 장관 : 100명)한 바, 당초 FAO측에서 의도했던 정상급 규모의 회의라기보다는 각료급 회의에 더 가까웠으며, 동 고위급 회의 경우 개최에 앞서 미리 FAO 사무국이 쟁점별 분석 및 권고리포트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회원국간 의견조율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 고위급 회의선언문 초안 사전 검토논의에 바로 착수, 민감 이슈의 경우 자국 입장만을 반복해서 주장함으로써 막판까지 선언문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일부 국가들은 자국입장만을 강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보이기도 했다.

브라질 대통령은 실제 곡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이오연료가 아닌 고유가라는 점과 브라질의 사탕수수 사용 바이오에탄올의 우수성에 대해 장황하게 연설하기도 했다.

선언문은 일부 국가의 막판 이견 제기로 폐회 시간(당초 오후 3시)의 수차 지연과 이로 인한 회원국들의 불만 고조로 인해 6.5 21시경 급히 채택되었으며 최종안에 대한 일부 반대국가들(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자국입장을 담은 statement를 선언문 부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선언문에 채택에 최종 동의하였으며 폐회 직전 각 지역그룹 대표간 closed meeting으로 문안을 논의한 바, 중남미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 국가들이 최종안을 그대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일부 수치오류 등 사실교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막판수정이 이루어졌다.

향후, G8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 대부분의 국제회의에서 식량 안보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나, 동 의제는 인도적 지원의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제로 당분간 구체적 실행방안 측면에서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는 최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측면과 함께 바이오연료 사용문제, 기후변화 문제, 식량주권 개념, 농산물 무역자유화(수출제한 조치 포함) 등 각 분야별로 우리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되, 관련 국제논의 동향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농업 · 통상 기사

Asia's other miracle(Economist紙 2008.4.16일자)

저 쪼그만 어항에서
금붕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살까
만약 내가 붕어라면 혀를 깨물고 죽으리...
하고 생각하던 차에



친구가 나에게 충고한다
붕어는 말야...
건망증이 심해서,
유턴을 하고 돌아서면 방금 온 그길을 까먹는대
그래서 늘 새길 이라는 거지...
얼마나 모든게 새롭고 신비롭겠냐고.....
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내 부러움 리스트에
금붕어가 추가됐다.

Asia's other miracle(Economist紙 2008.4.16일자)

[부제 : '빈곤'에서 '부자'로 가는 中, 베트남]

번역 및 정리 : 농촌정책국 도농교류과 사무관 전영미

'베트남(vietnamese)'이란 단어가 'boat people'이란 문구로 언론 보도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었던 것이 그리 오래전이 아니다. 1975년 사이공의 몰락 후 20년 동안 베트남을 정의하는 이미지는 이웃국가의 해안에서 씻고 있는 진흙투성이 피난 인파, 고국의 빈곤과 억압에서 도망치는 그런 피난민이었다. 그런 베트남이 기적처럼 발전하고 있음

베트남은 현재 아시아에서 앞서가는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과거 10년에 걸쳐 연평균 7.5%성장을 기록. 두 자리 수 인플레이션과 악화되는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올해 9% 성장에 대한 기대는 달성하기 어려울 듯 하지만 장기 전망은 유망

빈곤 밖으로 돌진하는(Shooting out of poverty)

베트남의 도시는 밝고 활기차며, 8,500만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농촌은 공식적으로는 더 부유한 태국에 비해 결코 뒤쳐져 보이지 않음

한때 아시아에서 두 번째 부국이었던 필리핀이 기근 완화를 위해 최근 베트남에 쌀 지원 요청. 배고픔에 시달렸던 베트남이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전후세대의 국제기구 진출이 베트남 외교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금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될 예정으로 자유무역의 우등생인 베트남은 이제 도하라운드에서 미얀마나 북한 같은 폐쇄국가를 지도하는 입장이 됨

베트남은 여기에 만족치 않고 부국 · 하이테크 국이 되고자 2020년을 목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고, 베트남의 이러한 결의는 결국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베트남을 통치하던 공산정권이 자본주의, 시장 및 무역 개방이, 부자가 되기 위한 확실한 노선이라고 받아들인 직후인 1986년 초 성공의 길을 달리기 시작하였음.

베트남은 1986년 'doi moi(재생)'라 불린 자유화 프로그램 시작하여 2000년 개인 기업 합법화 및 증권시장을 창설하고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수출입이 급증하여 베트남은 세계의 가장 개방적인 경제국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음. 부국에 대한 베트남의 꿈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임

무능력자에서 능력자로(From basket case to rice basket)

○ 농업의 기적은 지속될 수 있는가?

최근 베트남은 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쌀 수출국으로서 인도를 능가하여 베트남의 농업인은 모든 분야의 농업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에 차(tea)를 팔정도가 되었음

임어업인 또한 세계의 증가하는 요구에 맞춰 목재와 해산물을 잘 공급하고 있음.

물론 항상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베트남의 농림수산물 수출은 지난 해 21%, 125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성장이 더욱 기대 됨

베트남 경제변화의 성공은 국가 GDP에서 농업 비율이 하락에 따라 알 수 있음. 산업과 서비스 분야는 실제로 농업분야보다 급속도로 성장해서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고 현재 베트남에서 농림수산업은 모든 직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전에는 2/3이상), 인구의 70%이상이 여전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

그래서 성공적인 농촌의 경제는 베트남의 빈곤을 없애고 발전을 유지시키는 기초로서 중요함. 베트남의 농업기적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수단에 의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정부가 80년대 후반에 시작한 장기임대제도 도입으로 농가에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함. 토지의 소유권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중국처럼 농업개혁을 비교적 용이하게 달성

하노이 경제관리 중앙연구소의 Vo Tri Thanh에 의하면 베트남 농업의 경쟁력은 1) 대규모의 동등한 토지 소유, 2)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 안정화, 3) 농산물 가격의 점차적인 자유화, 4) 베트남의 점차적인 무역 개방화 정책에 의함

지금까지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농업인들에게 대량의 농산물 생산은 피하고 소량 다품종을 요구.

그러나 베트남의 세계은행 대표인 Chhibber는 최근의 생활필수품 물가의 회복에 관해 재고(reevaluate)해야 한다고 함. 아마도 세계가 주요 농산물을 선별하여야 한다고 외칠 때 베트남이 그것을 고수해야 만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봄

올 2월 필리핀은 베트남에게 쌀 공급의 보장을 공개적으로 요청. Mekong Delta의 많은 쌀 생산자들이 새우 양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농업의 다양한 변형이 극단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우려

최근의 토지개혁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흩어져있는 토지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변 이웃국가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베트남의 농업인은 가격변동 뿐 아니라 홍수, 가뭄 및 다른 자연 재해들로부터 취약함. 아직 보험회사가 재해 대비책을 수립하지 못했지만 곧 시도될 것임

베트남 정부는 태국과 같이 가정에서 손으로 직접 짠 생산품으로 전문화된 "craft village"조성을 촉진하고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임

인도차이나 캐피탈의 Nguyen에 의하면 베트남 농업은 곧 “품질관리 위기 (quality-control crunch)”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

소비자들은 농부와 식품가공업체들에게 식량의 이력을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고, 비료와 항생제를 덜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임

장기적으로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예측. 기후변화로 인해 베트남 대부분의 경작지와 인구는 멀지 않아 해수면이 될 것이고 이미 일어나고 있음. UN 기후변화 패널의 최근 예측에 의하면 2100년에 베트남의 해안을 따라 바다가 28-58cm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100cm상승도 배제할 수 없음)

베트남 과학자들은 작물파괴 및 극한 기후의 조성은 물론 베트남 토지의 1/8이 침수될 것이라고 예측함

❖ 참고 한국과 베트남의 현황 비교(2006년 기준)

구 분	한국	베트남	비고 (차이)
면 적	99,274km ²	331,114km ²	3.3배
인 구	4,800만명	8,250만명	1.7배
문 맹 (성인)	2.1%	9.7%	
도시인구	80.8%	26.7%	
G D P	\$ 6,800억	\$ 452억	7%
GDP/1인	\$ 14,160	\$ 550	4%
산업구조			
- 1차	4%	22%	
- 2차 (제조업)	41% (29%)	40% (20%)	
- 3차	56%	38%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에서는 「국제농업소식」 지를 발간하여 정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학계, 농림수산식품관련 단체 및 협회,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동 소식지의 내용이나 발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실린 내용들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제농업소식

발행처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 국제협력총괄과
Tel : (02)500-1858 Fax : (02)504-6659 www.mifaff.go.kr
인쇄 : (주)경성 Tel : (02)503-3223 Fax : (02)503-8338